

찾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19. MAR + APR

전 국 순 회 설 명 회 특 집 호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신승서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건강할 때가 아프지 않을 때인 것처럼,
괴롭지 않을 때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은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법륜

Contents



- 004 special interview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 006 power interview _ 정호선 변호사
- 010 hot issue
- 012 letter from _ 백인성 기자
- 014 real story _ 전남대 로스쿨 김은정 학생 / 충북대 로스쿨 이보영 학생
- 018 contest _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 023 symposium
- 024 happy lawschool _ 경북대 로스쿨 박소영 학생
- 026 opinion _ 경희대 로스쿨 정형근 교수 / 한국외대 로스쿨 최승필 교수
- 032 health mentoring
- 034 movie talk talk
- 038 kals news

로스쿨인사이드 PART 01 |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 040 법학적성시험 개요
- 042 출제 기본 방향 및 시험영역 소개
- 050 로스쿨 입학수기
- 052 로스쿨 합격 노하우

로스쿨인사이드 PART 02 | ALL ABOUT LAW SCHOOL

- 054 로스쿨 개요
- 056 교육과정 소개
- 058 장학금 제도
- 060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 062 실무교육
- 063 변호사 시험
- 064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진출

로스쿨인사이드 [붙임자료]

2019. mar + apr

발행일 2019년 3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김순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분들과 ‘기업 변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보수와 대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법률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변리사와 법무사, 노무사, 행정서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은 그대로 방치해 로스쿨 졸업생들의 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유사직역의 철폐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제도 개선에 찬성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하며 변리사 등
직역은 방치... 직역 확대 걸림돌

김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는 물론 모든 과목에 대해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고 기록형 시험은 당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과목별 중요 판례를 선별해 25개 로스쿨에서 공통으로 가르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에도 출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5년 내 5회’ 응시제한을 둔 취지는 당초 사법시험처럼 장기간 도전해 우수한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현재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 형태로 변질된 상황에서는 응시제한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험생에게 과도하게 부담 주는
현행 시험제도도 개선 돼야

다만 “10년 10회로 응시 기회를 늘린다고 해도 합격률이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현재처럼 50% 이하가 아니라 60% 이상만 되더라도 변시 낭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 사상 첫 지역 로스쿨 원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비(非) 수도권 로스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우선 전형을 꼽았다.

그는 “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지역인재 우선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게 되는 원

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의사·약사 시험과 달리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제도처럼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도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하거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되기 전까지는 축소·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응시 제한 규정도 좀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 필요

김 이사장은 ‘로스쿨=금수저’라는 인식은 과거 법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프레임에 국민들의 인식이 고착

화된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어느 교육기관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학금 중 77%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며 소득분위 1~3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다”며 “실력이 없어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돈이 없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와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기업·상사법 전문가이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2019-01-28)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매년 세계를 대표하는 100대 브랜드의 순위와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랭킹을 공개한다. ‘맥도날드(McDonald’s)’는 매년 10위권 안팎을 차지하며, 애플, 구글,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의 한국 본사에서 사내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호선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사내변호사는 법조인이지만 회사의 비즈니스까지 폭넓은 경험이 가능해”

정 호 선 변호사
한국맥도날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맥도날드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호선입니다. 제4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였고, 합격 이후 다른 회사를 거쳐 한국맥도날드에서 약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던 서울대 학부시절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고등학교때 처음 배운 불어가 너무 재밌어서 불어불문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인문대 수업과 사회대 수업을 주로 들으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던 학부 시절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하는 진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이라 로스쿨 진학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의외로 결정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학부 졸업 즈음에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문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바로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에서의 3년은 변호사님께 어떤 시간이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변호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준 친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다소 방황했다면, 로스쿨에 와서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심을 잡으며 공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던 시간들, 동기들과 열람실에서 차, 커피, 과자 같은 간식을 나눠서 먹고, 휴게실에서 수다를 떨던 시간들 모두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 교내 체육대회 때 티셔츠를 맞춰서 입고 교수님들까지 다 함께 했던 큰 공 굴리기, 법전을 들고 계주를 했던 일도 기억나네요(웃음).

현재 소속되어 계신 ‘한국맥도날드’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세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 대표적 음식인 ‘햄버거’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는 미국 본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 소속을 밝혔을 때 어느 누구도 맥도날드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웃음). 누구나 맥도날드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어서 회사 소개하기가 참 편합니다. 감사하게도 때로는 저보다 맥도날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맥도날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소송과 자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크고 작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회

사의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의뢰하는 내부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다른 부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반부

저는 계속하여 글로벌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해외 지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회사 경영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가요?

맥도날드 법무팀은 회사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를 돕고 있으며, 저희의 조언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독일 국적의 상사분께 영어로 보고하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차 나아지더니 근래에는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들을 영어로 설명하는 자신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맥도날드 사내변호사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 혹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을 상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항상 '고객 중심적'인 입장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내변호사는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하는 등 업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타 직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배려하는 등 팀원으로서 일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어 활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부 시절에 전공한 불어를 현재에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불어 혹은 불문학을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 부서의 헤드 분이 독일 국적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다닐 때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나 많이 영어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외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좋아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활용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쓸모가 없어보여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프랑수어를 업무에 활용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의 장·단점, 그리고 사내변호사를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내변호사로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은 회사 비즈니스의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이나 판례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비즈니스까지 경험하고 고려하여 자문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 기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사내변호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조직생활에 익숙하여야 하며 때로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저의 결론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로 이직하고자 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항상 회사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선배 변호사가 있는지, 내가 과연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계속하여 글로벌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해외 지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회사 경영에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법조인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불안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관한 정보 상당수도 결국 불안감이 만들어 낸 말들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불안한 마음에 여러 책 들춰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을 신뢰하면서 시험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issue 0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외치는 총궐기대회 열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협은 2월 18일(월)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응시자대비 75%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응시자 기준 87.15%였으나 매년 하락하여 2018년 제7회 합격률은 49.35%에 그쳤다. 이석훈 법학협 학생회장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낮은 합격률로 인해 변시 낭인만 양산하고 있다"며, "로스쿨 취지인 다양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학협 학생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법전원 교수, 현직 변호사들의 지지발언과 재학생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늘어나는 변시낭인, 법무부는 책임져라", "시험기계 양산말고, 전문인력 양성하자",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이다" 등의 구호도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이날 법학협은 의견서와 성명서를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issue 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3연승 쾌거

지난 1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결과, 서울대학교 법전원 '헬러'팀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5회 경연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47개 팀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변론능력을 겨뤘다. 한편 연세대 법전원 '헌신'팀이 금상, 서울대 법전원 '오후 네시', 성균관대 법전원 '수기치인' 팀이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울대 법전원은 제3회 대회부터 이번 제5회까지 3년 연속으로 우승팀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issue 03



태평양·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수상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8회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건국대학교 법전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월 12일(화) 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빌딩에서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팀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최우수상 수상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뉴미디어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건국대학교 법전원 '세르파'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도레미'팀과 성균관대 법전원 '컴파스'가 수상했다.

issue 04



웃음꽃 핀 졸업식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학위수여식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를 비롯해 대학 총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새로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입학식도 개최됐다.

변호사 진로로서의 언론계 직역에 대해



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

백인성 기자



출발선에 서신 변호사님들께

여덟 번째 변호사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3년 이상의 시간을 설 틈 없이 고단하게 달려온 여러분들께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곧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열리니만큼 여러분들 역시 향후 진로가 가장 고민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변호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전통적인 송무 직역의 변호사, 사내변호사, 정치권 진입, 근로자로서의 원직 복직 등 수없이 다양할 것이나, '변호사 진로로서의 언론계 직역'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등에서 7년 남짓 기자로 근무한 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한 코스닥 상장사 사내변호사를 거쳐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는 제가 상당 기간 몸담았던 분야이고, 그 동안 전문직을 영입하려는 언론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 사이에선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학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자 해당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일천한 경험이 담긴 글이므로, 로스쿨 학우 분들께서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 들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계에 진출하는 경로는 주로 언론사의 사내변호사가 되는 방법과, 실제 기자로 근무하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언론사 사내변호사 입사·수행직무

먼저 사내변호사로 언론계에 입사하는 것은 일반 사내변호사의 진입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법무법인과 전속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현재 지명도가 있는 언론사들은 조직의 대소를 불문하고 대부분 법무실(팀)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 조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구성원으로부터 별도의 추천을 받거나, 잘 아시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등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두세 차례에 걸친 면접 과정을 통해 입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 언론사가 법무팀을 꾸릴 때 합류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는 있겠으나 경쟁이 격화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언론사 사내변호사는 입사 후 일반 사내변호사와 달리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상 이해당사자들의 정정·반론보도신청에 대해 회사 입장에 서서 조정에 임하게 되며, 합의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일도 잦습니다. 빈도는 해당 미디어가 생산하는 기사 및 계열사 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사는 그 자체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므로, 사내변호사가 속한 언론사 및 그 임직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상당수 검토하게 되는

것도 언론사 특유의 업무입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계약서 검토와 법인의 민·형사상 소송 진행 역시 사내변호사의 일상적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로서 입사·수행직무

변호사가 기자로 언론계에 진입하는 문은 '생각보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기자 신규 인력 대부분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현재 상당수 언론사들은 전문직 종사자의 입사를 환영하고 있어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의사·CPA·동시통역사 등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논술 및 작문 제출, 교양을 검증하는 상식시험 등 필기시험 전형을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으며, 응시연령을 묻지 않거나 여학생적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입사 이후에는 각 회사 데스크로부터 신입기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자로서의 실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입자들의 경우 통상 사회부에 배치돼 경찰서를 출입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기도 하나, 변호사 겸 기자로 입사한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출입처(기자가 기사를 주로 취재하는 곳)에 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된 출입처는 변호사를 기자로 선발한 목적과 지식, 적성을 고려하면 사회부(법조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일반 기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취재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기자로서 요구되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자가 내놓는 결과물은 기사이고, 일간지의 경우 아이템(기사거리) 발굴-취재 및 보고-데스크 허락-추가 취재-기사 작성-출고라는 과정을 매일 거치게 됩니다. 기자로 일한다면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소양(법학 지식 등)은 더 광범위한 정보출처(예컨대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법정·임의단체 등)를 확보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단시간에 압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특히 언론사는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회사가 상당수이므로 입사시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영입인력이 상명하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게 언론사가 전문직 영입을 과거부터 계속 시도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께 호기심과 근성, 작문 능력 등이 있다면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처우는 각 언론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자로 입사하는 경우 사내변호사와는 달리 일반 기자의 연봉테이블에 속하게 되므로 최초 수령하는 급여의 수준과 상승률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증 수당, 협회비 등 비용처리 등 세부적인 처우의 반영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남기고 싶은 말

언론계 진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실현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미디어 직종은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입니다. 늘 변호사 시장은 어렵고, 점차 업무의 내용이나 대우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변호사님들이 고민할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입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앞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백인성 기자

- △ 연세대 경영학과 졸
- △ 변호사시험 5회
- △ 現 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
- △ isbaek@mt.co.kr



로스쿨 1년 - 고백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은정

“한 번 출발하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향해하는 배와 같다” 로스쿨 입학 전 프리로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로스쿨 생활을 설명했던 문장입니다. 그 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막연히 로스쿨 생활이 정말 힘들다는 소리구나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난 1년간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마다, 교수님이 해 주셨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3년간 8과목,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1학년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3학년 변호사시험을 볼 때까지 멈추어 쉰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할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기만 한 로스쿨의 생활을 땅에 닿아 휴식을 갖지 못하고 떠도는 배로 표현한 것이 정말 적합하다고 동기들과 웃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길 바라지만, 지난 1년은 저만의 향해 방법을 찾기 위한 조금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다가갈 방법은 모르는 상태로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공부에 무조건 달려들었습니다. 낮은 지식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내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내일 배울 것을 준비하면, 이미 오늘이 지나 내일 새벽이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방법과 목표를 찾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했어요. 그 때는 그런 날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 조급함과 불안에서 오는 오판이라는 것을 그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보던 동기가 2학기 중간고사 즈음 저에게 “발을 묶고 종종걸음 치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에 비해 멀리 가지는 못한다는 따끔한 충고였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로스쿨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이 그러듯이 저도 공부하는 방법을 제법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답안지 침삭을 받으며 그 친구가 해준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며 분명 이해하고 외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답안지에 적기가 너무 힘들었고, 조금만 변형되어도 답을 찾아내는데 몇 배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되물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맞나?”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던 제 공부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어요. 고집을 내려 놓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제가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붙잡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시험을 준비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의 교수님, 학회에서 알게 된 선배, 다른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던 동기, 비법학사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친구까지. 한 명 한 명이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부한 책을 보며 어떻게 기본서를 “읽어야”하는지, 조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과거형을 사용해서 설명하니, 제가 이미 그 답답한 단계를 넘어선 것만 같지만, 아직은 저만의 공부방법을 배워 가는 중에 있습니다. 몇 번이나 조금 한 마음에 이전 방식이 고집스럽게 튀어나오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그 마음을 눌러 담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 다짐과는 다르게 로스쿨 적응이나, 공부방법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제 로스쿨 첫 해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몰라 리트를 처음 준비

했던 순간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제가 고민하고, 거쳐갔던 모든 부분을 이 글에 적지는 못했지만, 제 부족한 글이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혼자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아님을, 잠깐 길에서 벗어났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 걸 전하고 싶었어요.

로스쿨에서의 2019년은 지난 해보다 더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로스쿨에서 학생회란 무엇인가?

민원창구로 전략해버린 로스쿨 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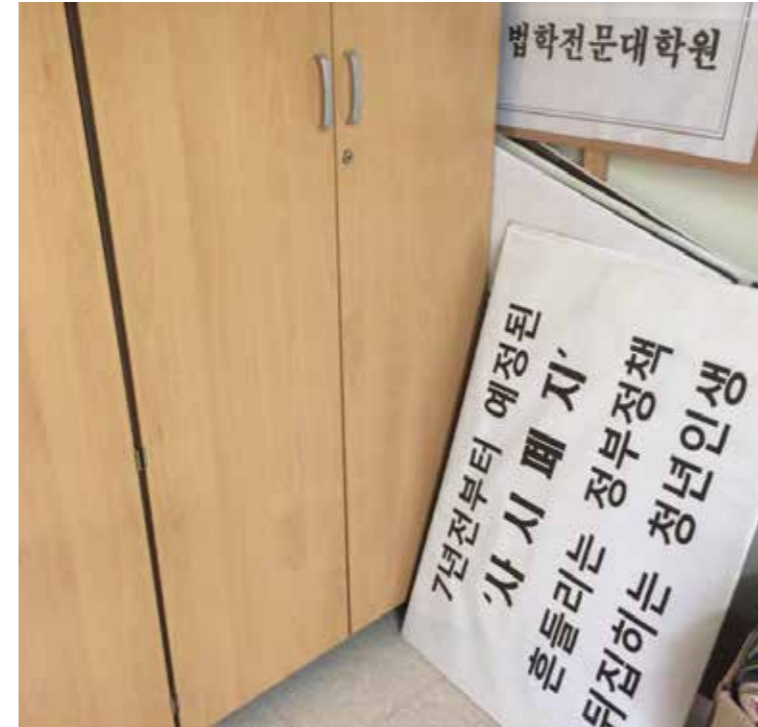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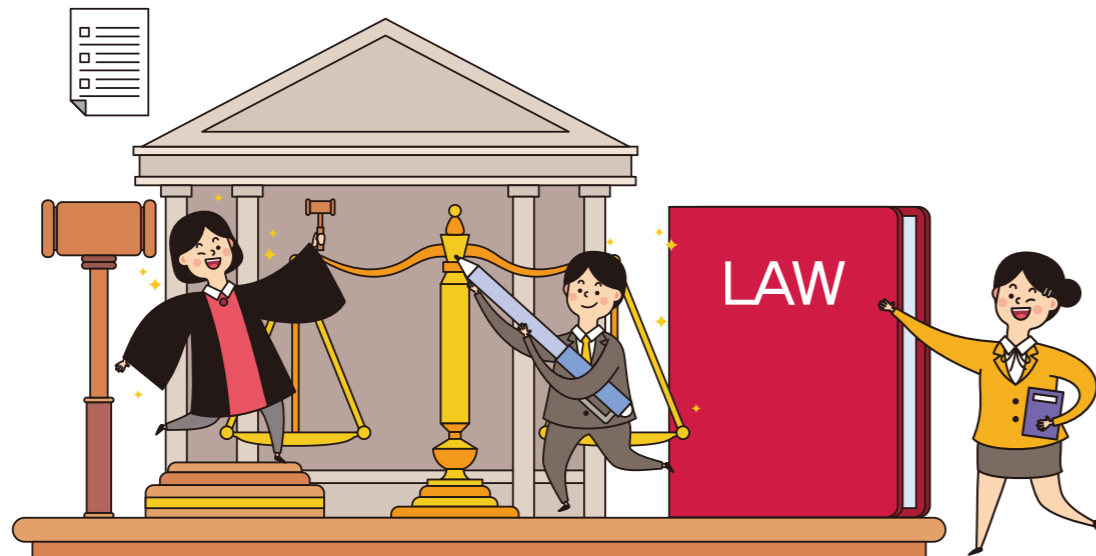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보연

매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낮아지는데 변호사시험에 '올인'하지 않고 학생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회 임원을 맡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턱대고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첫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영영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변호사시험은 4월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초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시 시험부터 6개월 남짓한 수험기간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초시합격률이 가장 높고, 횡수를 거듭할수록 누적곡선을 그리며 합격률이 감소한다. 불합격을 예상하고 발표가 나기 이전부터 시험공부를 재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실제로 학생회 임원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저조하다. 이런 탓에 필자가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의 10기 학생회는 구성되지 못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임시 학생회)로도 자원하는 이가 나오지 않아 결국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회장도 추천으로 정하자는 의견까지 분분하게 오갔지만, 학생회장까지 추천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필자가 결국 자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만 되는 학생회는 없으면 그만 아닌가? 며칠 전 학생회실을 청소하다가 창고에서 팻말 하나를 발견했다. 팻말에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사시폐지,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 인생"이라 적혀있었다. 잊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입학하기도 전의 이슈인 사법시험 부활에 대응해 선배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로스쿨을 지켜냈던 것이 기억났다. 만약 로스쿨에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생을 배출해야 하는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나 학교 행정 등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하는 등 학생회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행동은 일개 학생으로서 하는 행동보다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학생회가 없었다면, 학생회 연합회가 없었다면 그런 집단행동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도 학생회의 공이 컸다.

그러나 이처럼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생을 배출해야 하는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나 학교 행정 등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하는 등 학생회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행동은 일개 학생으로서 하는 행동보다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학생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변시도시락 지원도 있다. 변시도시락은 변호사시험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선배님들의 점심식사를 챙겨주는 것이다. 보통 밥과 죽 메뉴를 따로 신청 받아 오전 시험 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배달을 시켜 선배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는 일이다. 변시도시락을 학생회 차원에서 챙겨주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필자가 직접 진행해보니 한 시간 반이나 되는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입생 OT도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대신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렇듯 그 어떤 단체에서보다 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 곳이 법학전문대학원이다. 그럼에도 학생회 활동이 이렇게까지 기피되는 원인은 학생회에 몸을 담았던 학생들이 저조한 시험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이

다. 나 역시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친구들도 학생회를 한다는 이야기에는 걱정스러운 반응뿐이었다.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데도 조금의 축하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회 임원이기에 앞서 변호사시험에 붙어야 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교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학생회가 단순 민원창구로 전략하지 않도록, 일을 떠넘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는 재학생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구성되는 것인만큼 사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학생회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학생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조화로운 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또한 수험생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왕좌는 누구에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와 닮은 사건을 가지고 원·피고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인으로서 재판과 동일한 변론 경연을 펼치는 대회이다.
10회째를 맞이한 올해 대회에도 어김없이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대회의 권위와 명성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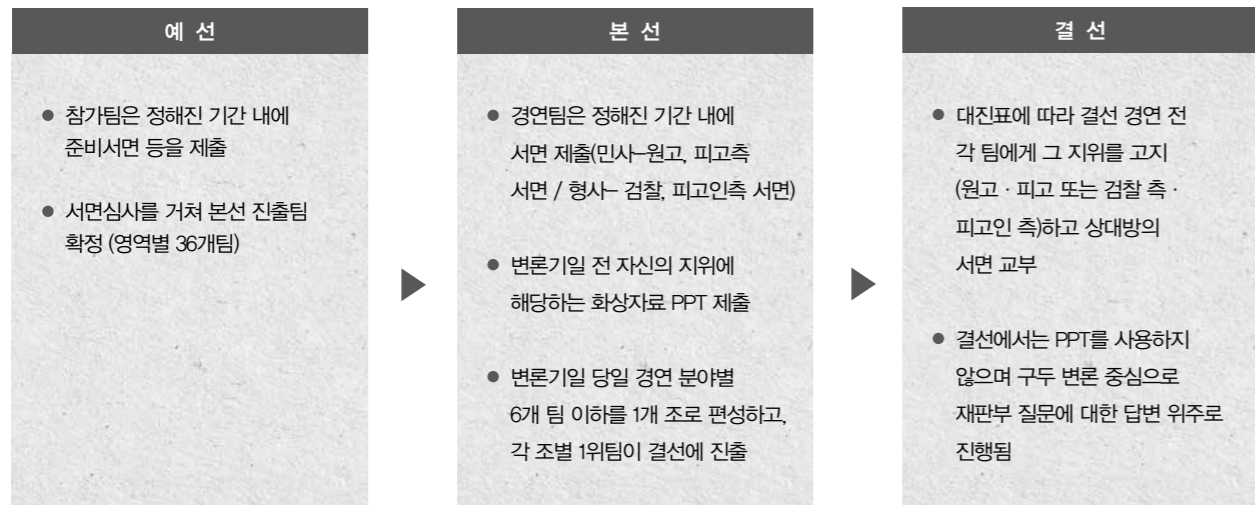
시상식에 참석한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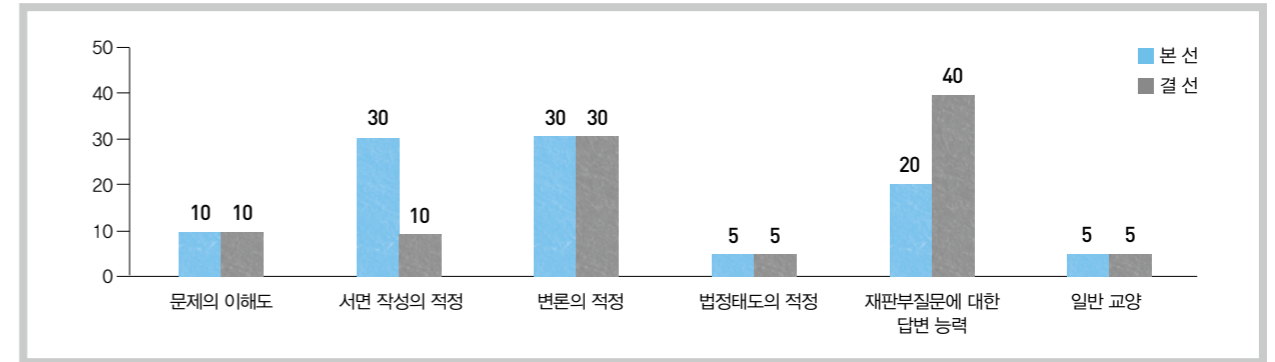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수상팀에게 트로피를 건네고 있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3개팀(36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결선에 오른 로스쿨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를 통해 변론을 하기 보다는,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과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변론하는 등 기성 법조인과 비교했을 때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변론 실력을 보여주었다.

■ 경연 방식



■ 평가요소 배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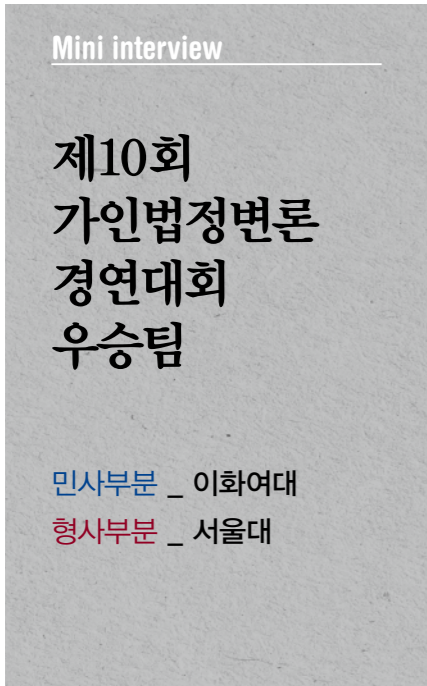
■ 제10회 경연대회 문제

민사부문	허위표시에 의한 피담보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해 그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에 대해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부문	집회참가자가 함께 집회에 참가한 공동 피고인인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체포행위에 나섰던 경우 책임조각 사유 성립 여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 제10회 경연대회 결과

순위	상의 명칭	수상팀(명단)
1	가인상	민 사 - 이화여대(심상아, 김나란, 박정은) / 형 사 - 서울대(이해성, 임상일, 김재완)
2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민 사 - 경희대(김희성, 송채은, 피봉희) / 형 사 - 고려대(김희진, 김승렬, 안현석)
3	법률신문사장상	민 사 - 고려대(나조은, 이정현, 구경완) / 형 사 - 서강대(정병현, 김미화, 봉하진)
4	자유상	민 사 - 경북대(김유정, 황선화, 황인) / 형 사 - 서울대(권준희, 배지연, 김찬)
5	평등상	민 사 - 경희대(박윤철, 임현진, 배기환) / 형 사 - 부산대(박도영, 이희승, 박가영)
6	정의상	민 사 - 성균관대(한민국, 윤병서, 송수민) / 형 사 - 전남대(정보윤, 김정무, 정현석)

※ 개인최우수상: 민사- 이화여대 심상아 / 형사- 서울대 이해성
 ※ 단체상: 서울대(자유상), 고려대(평등상), 서강대(정의상)
 ※ 민·형사부문 각 결선진출자 36명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추천권이 주어지며, 재판연구원 선발 시 서류전형은 면제받을 수 있다.



Q. 팀원 소개 및 대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주세요.

민사팀 ▶ 저희 팀은 10기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2학기 때 같이 팀을 구성해 가인대회에 나가보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던지라, 저희끼리 서로 노익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학업에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로스쿨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대회준비를 하면서 세 명이 호흡이 잘 맞았고, 서로가 가진 장점이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어 시너지를 냈고 특히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형사팀 ▶ 팀장의 소개로 서로 친구가 되었고, 그 후 2년간 우정을 다져 오고 있습니다. 함께 스터디를 하던 중 아직 서울대에서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 부문 우승이 나온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우리가 최초가 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가인 대회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학부 배경도 다르고 가진 능력도 상이하여 이를 잘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민사팀 ▶ 기말고사가 늦게 끝나 다른 학교들보다 일주일 정도 뒤처진 상태에서 서면과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 법학 지식이 부족한 1학년들이라 리서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쫓기듯이 서면을 작성해야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면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변론에서 최대한 보완하여 방어하겠다는 전략이었고, 그 준비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했던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팀 ▶ 일정관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예선의 경우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고, 본선의 경우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연말, 연초에 대회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팀원들 서로 일정을 어느정도 양보하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Q. 서면심사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민사팀 ▶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서면을 쓰기 시작하면 쟁점을 빠뜨리거나 뒤늦게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의 구조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할 내용과 각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내용은 반드시 나머지 팀원들의 검토와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거의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수정작업을 하였

Q.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민사팀 ▶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상하자라는 각오보다는, 주어진 시간동안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원 개개인의 민법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수상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판례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완결성 있게 갖추고자 노력했던 점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이 수상을 통해 어느정도 인정된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쁩니다.

형사팀 ▶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가 노력이 보답 받게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상 욕심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일 것이고, 팀원들과 함께한 노력이 다행히 좋은 성과로 돌아와 정말 기쁩니다.

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서면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변론에서도 서로에 대한 백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 우선 놓치는 쟁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꽤나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쟁점이 숨어있을 수 있고, 개중에는 명확히 눈에 보이는 쟁점도, 숨어있는 쟁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쟁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리서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판례, 기본서, 논문 등). 다음으로는 이렇게 추려낸 쟁점들을 적절한 분량으로 적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한된 분량(올해의 경우 각 15장) 내에서 하고자 하는 주장을 전부 마쳐야하기 때문에, 모든 쟁점에 대해 세밀하고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약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 초안을 작성한 뒤 계속해서 분량을 줄여나가며 줄어드는 분량 내에서도 원래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단어선택이나 문장의 배치 등에 많은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Q. 본·결선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민사팀 ▶ 변론준비는 공통적으로 ① 간결한 문장으로 주장을 정리한 스크립트의 작성 ② 상대방 주장의 경청 및 그에 잘 대응되는 반박 ③ 판사님들의 질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문서인 서면과 말로 하는 변론은 차이가 있으므로 변론에서는 가급적 쉽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스크립트를 준비하였더라도 원고의 변론을 들으면서 스크립트를 즉석에서 수정



민사부분 우승팀_이화여대



형사부분 우승팀_서울대

하여 변론함으로써 원고 주장에 정확히 대응되는 반박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③ 변론이 끝나면 판사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순발력은 결국 평소 지식에서 나오므로 문제된 쟁점에 관한 법적 지식을 꼼꼼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결선의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판사님들께서 결선 문제에만 집중하여 질의하십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결선 문제가 10회 대회처럼 미리 출제되어 준비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에 관해 많은 질의를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결선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깊이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팀 ▶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인 만큼 변론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① 주어진 시간을 넘기지 않을 것과 ② 재판부를 바라보며 변론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세부 쟁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처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PPT에는 충분한 내용을 담되 입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만 짚어주고 넘어가는 식으로 발표 대본을 짰는데, 이 부분이 시간관리에 있어 상당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이 다소 엄격한 면이 있어 연습 당시에는 대본을 보지 않고 발표연습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팀원들 각각 본인의 언어로 대본을 소화해낼 수 있었고, 결국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바라보며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결선의 경우 준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본선과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크고, 1시간 내에 새로이 추가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결선 상대방 서면을 분석해 반박 논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단계에서는 본선에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팀원들끼리 각 쟁점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을 주고받으며 논리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나온 좋은 논리들을 검사에게 유리한 것, 변호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숙지해두는 것이 결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팀을 우승으로 이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사팀 ▶ 가인법정변론대회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승 요인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저희만의 명확한 논리 관계를 세우려 노력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된 사실관계는 A인데 법리가 인용될 수 있을 만한 판례는 A'라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는 A와 A'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논의하였습니다. A에 A'의 판례법리를 인용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인용될만한 판례들의 원심판결부터 찾아 그들 사실관계와 문제된 사실관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꼼꼼히 정리하였고, 서적 및 논문, 외국자료 등 수많은 참고자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형사팀 ▶ 90점짜리 서면을 쓰고 60점짜리 변론을 한 팀은, 80점짜리 서면으로 80점짜리 변론을 한 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특히 변론 준비에 다른 팀들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세요!

민사팀 ▶ 로스쿨 생활 3년 동안 공부하실 것도 많고 신경쓰실 것도 많겠지만 가인법정변론대회는 꼭 도전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면과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것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대회 후에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면 쓰는 연습을 미리 한번 해본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도전 후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 길고 힘든 로스쿨 생활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하시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사실 로스쿨에서 공부한 지난 2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협업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혼자가 아닌 팀으로서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인법정변론대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법학 실력도 성장시키고, 또 앞으로 꼭 함께할 좋은 동료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팀 단독 질문: 상금을 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발하고 선한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요?

형사팀 ▶ 사실 팀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기부가 힘들었을 것인데, 다행히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처음 대회를 지원하며 서울대학교 최초 형사 부문 대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상금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약속했는데, 현실이 되었으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가 선례와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1 개최일정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14:0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서울 중구 소재)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제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2 프로그램

시간	내용	진행
14:00~14:20 (20분)	인사말 / 축사 • 인사말 : 김순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축 사	사회 김명기 국장 (법전문원협의회)
14:20~15:50 (1시간 30분)	주제발표 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 • 이승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②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 명순구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조소영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이승호 교수 (건국대 법전문원)
15:50~16:05 (15분)	휴식시간	
16:05~17:35 (1시간 30분)	종합토론 김인재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정 (교육부) 미정 (법무부) 장승주 기자 (아주경제,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17:35~18:00 (25분)	질의응답	
18:00	폐회	

건축과 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건축과 법은 전혀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있다. 자신이 공부한 두 영역의 지식을 정의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따뜻한 꿈을 가진 박소영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박소영 학생



법학과 만난 건축학도

박소영 학생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그가 뛰어난 학부 성적과 '우등 졸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과 명석한 두뇌 때문만은 아니었다. 매학기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가져다주는 성취감, 언젠가 자신이 지은 건축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리라는 기대감은 그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학부 생활을 마친 후, 삼성물산 산학장학생의 기회를 얻게 된 박소영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해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던 학부와 다르게, 대학원에서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과 공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박소영 학생은 법학의 무게와 필요성을 깨달았고,

'법조인'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건축에 대한 발주,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시공전반의 과정을 배우다 보니, 모든 과정에서 '계약'이 필수적인 조건이더라고요. 특히 건설은 사업 규모가 커서 다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법률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축과 법이 매우 밀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 분야와 법률을 모두 아는 사람이 분야 간 의사소통의 다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에서 정신승리하는 법

로스쿨에 입학하긴 했지만 이공계 건축학도에게 법학은 낯설고 어려운 학문이었다. '사례형'이 무엇인지조차 감을 잡

지 못했던 새내기 시절, 그는 '다 사람이 하는 공부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으로 사례집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례형은 그렇게 적는 게 아니었어요. 팔 운동만 열심히 한 거죠(웃음)."

글을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익숙했던 탓에 '법학적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박소영 학생은 "1학년 첫시험 답안지에 목차도 없이 '감은 무엇무엇을 하였음'이라고만 간략히 적었다."며 "내용을 알면 형식이 뒤따라 온다는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조언대로 목차와 형식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 두려움이 점차 줄었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이공계적 유전자를 가진 그가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노력과 끈기,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멘탈이 한몫했다.

"1학년 때 한번은 패기를 가지고, '아! 오늘 하루는 임대차만 끝내야지!'라고 다짐했던 날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판례를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봤는데, 판례에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웃음). 결국 임대차 부분을 읽는 데만 나흘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후에 판례를 읽을 때에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고 읽는 속도도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조금하게 하루 만에 다 끝내려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 못 끝내요(웃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 여유는 사실 1학년 때밖에 없거든요."

배운 지식을 정의롭게 활용하는 법조인으로

법학에 대한 재미와 개념을 잡으며 보냈던 1학년과 헌법 재판소, 김·장 법률사무소, 검찰 실무수습 등 다양한 경험을 했던 2학년, 박소영 학생의 로스쿨 생활은 누구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법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며 "건물의 높이, 색깔, 구조 등 건축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법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규제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규제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 살고 있는 집도 다 규율과 규제에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사실이 무섭기도 하면서, 그만큼 법조인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고 있는 박소영 학생의 꿈은 무엇일까. 그녀는 "건축 지식과 법학 지식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무엇을 하고 싶다고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열심히 공부한 건축과 법학 지식이 조금 더 정의롭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Lawschool TIP

박소영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1 자신 있는 영역부터 확실하게

리트에서는 자신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약점 영역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비교적 재미있고 점수가 잘 나왔던 추리논증 영역을 먼저 확실하게 한 후, 취약했던 언어이해 영역에 집중했다. '언어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엑셀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엑셀을 이용해 살아온 시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내 삶에 있어서 굵직하거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연도별로 열거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어봤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막연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3 내 모습을 영상으로 마주하기

면접을 준비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몰블레이밍'인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그럴 때는 영상으로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해볼 것을 추천한다. 자신이 면접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 있는 자세라든가 버릇, 태도 등 면접 전반에 임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의 문제점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은 법리적으로 볼 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변호사가 수입한 사건에 한정하여 법조 유사직역이 보조인이나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를 입법론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 상호간에만 동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다른 종류의 자격사 사이에서도 협업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변호사·법학박사)

변리사는 현재 변리사법 제8조에서 인정된 소송대리권의 권한을 특허침해소송까지 확대해 달라고 한다.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법무사는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허용해 달라고 한다.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주장의 불씨는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있다. 동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법조 유사직역 중 유일하게 변리사만이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된 소송대리뿐만 아니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대리권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2. 변리사법 제8조의 연혁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16. 군사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에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내각을 조직한 후 입법부 권한까지 부여한 바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변리사법을 제정·시행하였는데, 바로 그 때 제8조가 규정된 것이다. 그 당시에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지만, 1961년 당시에는 변리사가 10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변리사의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 해방 당시 조선인 변호사는 244명에 이르렀고, 미군정 시대에 새롭게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1961년경에는 변호사등록자가 1,206명이었으며, 개업 중인 변호사는 491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변리사법 제8조에서 인정한 소송대리는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실제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법을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변리사법을 제정하던 때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을 하던 구조였다. 그렇기에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졌더라

도 실제로는 대법원에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의 위법 여부를 다루는 서면을 제출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변리사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같은 법정에서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 역할과 사실심에서의 역할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변리사법 제8조는 오늘날과 같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의 소송대리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3. 특허법원의 창설로 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 확대

그런데 1994년에 개정된 법원조직법으로 1998. 3. 1.부터 특허법원이 창설되었다. 이때부터 변리사가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인 특허법원에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물론 변리사가 소송대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허법원의 관할사건인 특허심판원을 거친 심결 관련 소송에 한정된 것이다. 특허법원이 창설될 때 변리사가 사실심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입법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연 특허법원에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변호사의 소송대리 원칙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는 급변하는 법조환경의 변화에 무감각하게 지내는 바람에 이런 상황 앞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변리사는 사실심 법정에까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게 되는 직역확대의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변리사들은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하

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변리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비판도 높다. 실제로 변리사법 제8조의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소송대리의 종류를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기에, 특허 등의 심결에 관련된 소송은 물론 범위를 넓혀 특허침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소송대리도 할 수 있기에 특허침해소송도 대리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과 변리사법 제8조의 제정 연혁, 법조 유사직역 중 유일하게 소송대리를 부여받은 변리사의 소송대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4. 변리사법 제8조는 평등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인한

법조 유사직역 중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시혜적 법률조항인 변리사법 제8조는 세무사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허심결과 관련된 소송대리에서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변리사를 제외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업무범위는 행정심판 단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지위도 인정받고 있다.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변호사와 법조 유사직역 간에 직무로 인한 분쟁절차에서 관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생각건대 행정심판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세무사 등의 자격사가 대리인이 되어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심리를 하고 재결을 하기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무이행재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직권주의를 채택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기에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다. 소송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제대로 된 주장·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부터 각종 법률과 명령 등의 법령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법지식과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판사, 검사로 임용되고 있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변리사법 제8조는 행정심판의 대리인 지위까지만 인정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관세사 등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자격사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에 해당되어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변리사의 시험과목이나 고유한 직무사항에 비추어 볼 때,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무릇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그런데 법조 유사직역중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이라는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리사법 제8조는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같은 유사직역 자격사가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위헌여부를 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에 해당된다. 헌법상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재판청구권 등과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한 민법상 위임계약상의 법률상 권리가 아니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관한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문자격사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

어느 자격사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지만, 그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하여 설정할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자격요건의 설정에 대한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가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옳으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헌재 1996. 10. 4. 94헌바32)”고 한다.

법조 유사직역의 주장처럼, 변리사·세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해마다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헌적인 개정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 유사직역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변리사나 세무사가 그 직무수행에서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예컨대 변리사는 변호사와 달리 전문적 기술과 능력이 있어 공인된 기술과 상이한 기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법지식이 검증되었다면서 변리사시험 과목에 민법개론, 민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세무사는 조세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법무사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에서 뛰어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이 없이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의료인이 아닌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 사실이 작금에 보도된 바 있는데, 수술을 잘한다는 그에게 의사 자격을 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허용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변리사·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과 비교하여, 누가 더 소송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변리사가 기술분야에 대하여 변호사보다 전문성을 갖는다는 주장도 많은데, 그런 기술이 규범적 평가를 하지 않고 오로지 변리사만 알 수 있는 특수한 것이라면 법원에서는 “검증”을 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 다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변리사의 기술에 관련된 주장·입증을 판결하는 판사는 기술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기술이든 법규범적 평가·해석과 무관한 영역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변리사시험 과목에 민법개론을 객관식(필수과목)으로 보고, 민사소송법을 논술형(선택과목)으로 보기에 소송대리에 관한 법지식이 검증되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소송대리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민법, 민사소송법(선택과목이라서 모든 변리사가 이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없음)만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면, 왜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개의 선택 법과목, 공법기록형, 형사기록형, 민사기록형 과목을 필수적인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어떤 소송이든 타인의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런 과목 정도는 반드시 익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6.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임

변리사·세무사 등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주장의 핵심적 본질은 우회적인 변호사 자격의 취득시도라 할 수 있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부여된다면 법정에서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변론을 하고,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다. 본안사건의 소송대리뿐만 아니라 신청사건의 가압류·가처분신청과 대리인이 된다.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구까지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인정받은 소송대리권 범위 안에서 변호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변리사·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이 소송대리권을 얻어 활동하려는 것을 마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인답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한 소송대리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 소송대리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해당 자격사시험에 “변호사 시험 과목”을 추가하여 그 법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정식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

할 일이지, 특정 자격사시험을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항변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렇다! 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법무사 신분에서 덤으로 소송대리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라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어 뿔뿔하게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변호사만이 그 자격취득에 학력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시험의 합격만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주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고 할 것인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자격취득이 용이한 변리사나 세무사가 된 후에 그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아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제도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는 침해받게 된다. 또한 국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받는 위헌적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7. 결론

변리사, 세무사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입법안이 발의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헌법상 전문자격사제도와 직업의 자유 및 소송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변리사법 제8조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정적인 해석을 할 때 비로소 합헌조항이 된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신속하게 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 만약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이 입법화된다면, 나중에는 특허법위반, 조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변론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지위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소송대리권 주장은 단순한 직역다툼이 아니라, 소송체계에 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신기루를 좇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은 법리적으로 볼 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법조 유사직역이 보조인이나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를 입법론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 상호간에만 동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다른 종류의 자격사 사이에서도 협업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

축적의 시간

입법에 있어 축적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현재의 법을 평가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사회 갈등요소를 제거해내지 못하는 때에는 그 법을 개선하려는 능동적 의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파이를 둘러싼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 파이는 커졌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지만 그러나 이익갈등은 오히려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축적의 시간’, 기술발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이다. 이 문구를 제목으로 한 책에서는 과학기술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아웃라이어’ 라는 책에서 말한 1만 시간의 법칙과도 비슷하다. 우리가 하루 중 노동을 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1만 시간이라는 것은 약 10년의 시간을 의미한다. 전문가라는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법의 시간은 법과 판례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와 좋은 법을 원하는 시민의 의지가 축적된 삶의 역사이다.

로스쿨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맨 처음 느끼는 것이 법과 판례가 주는 위압감과 절대감이다. 법은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법률가는 법을 비판할 수 있는 시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에 대한 수동적 태도는 보다 좋은 법을 축적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 이라는 말은 중·고교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 주입되어 왔고,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주체적 시민으로서 좋은 법을 만들려는 의지는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일깨워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부지불식간 순응적 시민으로서, 견제 받지 않는 입법자와 법조인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법은 절대자가 내려주는 기준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합의에 의해 준수되는 규범이라고 봐야 한다. 즉, 삶의 축적된 모습이 바로 법이다.

독일법에서 점유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유목민족이었던 초기 게르만의 전통에서 나왔고, 개인소유권의 강한 불가침성은 미국의 서부개척을 위한 토지분배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국선번호인의 선임은 대등한 조건이어야 승부의 결과를 명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사들의 결투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나왔으며, 배심제도 역시, 왕 또는 영주가 각 개별사건에서 마을의 사정을 알 수 없어 마을의 명망있는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에서 시작한다.

삶속에서 법이 형성되는 것은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유경제가 효율적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이익과의 조화과정에서 중간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것이 법령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우버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택시와 경쟁하지 않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우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혹은 지역제한적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을 허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 역시 훗날 기술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축적의 시간을 거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입법에 있어 축적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현재의 법을 평가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사회 갈등요소를 제거해내지 못하는 때에는 그 법을 개선하려는 능동적 의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파이를 둘러싼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 파이는 커졌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지만 그러나 이익갈등은 오히려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명되고 자동차와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져 시간이 단축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점점 더 기술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익의 대립구도에서 균형적 정의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가들의 참여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간 우리 법률가들은 입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송중심적 사고를 가져왔고, 이는 입법영역에 변호사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여기에 더해 법적지식과 도그마를 넘어 개별·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습득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도 일조했다.

판례는 전형적으로 축적의 시간이 필요

하다. 오랜 시간동안 재판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듬어진 판례는 추상적 법률이 채우지 못하는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판례는 완벽한 답은 아니다. 그 시대 일반 다수가 받아들이는 답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적 법 감정 또는 사회적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오늘의 정답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가가 판례를 대하는 태도는 존중하되, 추종하지 않아야 하며, 비판하되, 신중해야 한다.

한 사회의 규범으로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생활의 기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신뢰이다. 법과 판례가 하드웨어를 구성한다면 신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5년 OECD가 발표한 사법제도의 신뢰성 조사(A Justice you can trust?)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물론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차지하더라도 사법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는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래도 국민들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법농단사태를 보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나름의 전통과 관행을 쌓아왔지만 권력을 부여했던 국민들의 수준에 걸맞은 축적의 시간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축적의 시간은 누가 주도할 것인가? 법이 법률가만의 법으로 남을 경우에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적 견제가 없는 법은 개선의 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법률가들의 이익에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법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축적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하며, 법률가들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시민이 법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당시의 귀족 언어였던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어로 이를 작성했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귀족의 법을 시민의 법으로, 성직자만의 신을 모두의 신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을 만드는 일은 법률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진 과제이다.

새봄, 로스쿨은 우리의 법과 사법시스템의 중추를 맡아 줄 새내기들을 맞았다.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부합하는 법과 판례를 형성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과제가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변화는 어느 한순간 기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하면서도 오랜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온다. 금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예비법조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긴 축적의 시간에 의미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허와 실...

지방 태우는 몸을 만들어라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다이어트 결심을 하는 사람이 많다. 다이어트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실천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법의 효과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간헐적 단식... 어지럼증, 저혈당 주의해야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헐적 단식'이 등장하면서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으로 16시간 동안 단식, 8시간 사이에는 식사를 하는 방법이다. 아침 공복,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은 오후 7~8시 사이에 챙겨 먹는다. 8시간 안에 2~3끼 정도의 식사를 하는 패턴이다. 그 외 야식은 금해야 한다.

식단은 평소 먹는 식단으로 구성해도 괜찮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칼로리 높은 케이크나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헐적 단식은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지방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단식을 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 대사가 합성 모드에서 분해 모드로 바뀐다. 강북삼성병원 종합건강센터 박용우 교수는 "보통 단식 후 12시간이 지나야 지방 대사가 시작된다"며 "저녁식사와 아침식사 사이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고, 이미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지방 대사가 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더 길게 단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1~2회 16~24시간 짧은 단식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 후 저혈당, 어지럼증, 저혈압 등이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24시간 단식은 중간 중간 개인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간식, 야식을 평소 즐겨 먹던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식욕이 급격히 올라 폭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속하기 힘들어

수년 전부터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체 식사량의 60~9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방식인데, 다이어트 시 금기시됐던 삼겹살·버터 등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는다는 것이 신선해 인기를 끌고 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식단은 예를 들면 아침은 버터와 오일을 섞은 커피인 '방탄커피'로 시작하고 점심은 삼겹살과 아보카도 버터 야채 볶음, 저녁은 돼지고기 구이에 치즈, 피칸, 야채구이를 먹는 것이다. 설탕, 밥, 빵 등 탄수화물 식품은 거의 먹어서는 안 된다. 평소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살이 찌는 사람이 2주 정도 짧게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삼겹살, 베이컨, 갈비, 연어, 소시지, 아보카도, 버터 등의 식재료를 가지고 매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지방섭취로 인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도 있지만 대사질환도 예방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탄고지 식단의 한계를 입증한 연구"라며 "지방 섭취량이 전체 섭취 칼로리 대비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견과류·올리브유와 같은 식품에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식물성 음료만 먹다 영양 부실

아몬드유, 귀리음료, 코코넛밀크 등 식물성 음료가 핫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끼니 대신에 식물성 음료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다. 칼로리가 우유(200mL 기준 130~140kcal)보다 아몬드음료(190mL 45kcal), 귀리음료(190mL, 65kcal), 코코넛밀크(200mL 100kcal)로 낮다. 그러나 이들 식품만 먹어서는 영양 부실 위험성이 있다.

아몬드음료는 비타민E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타민D 함량 역시 많아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다만 아몬드 우유는 1컵에 단백질이 약 1g 정도로 포함돼 있어, 우유가 8g인 것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귀리음료는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그러나 단백질이 2g 정도로 우유에 비해 적으며, 귀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 설사·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코넛밀크는 열량을 주의해야 한다. 코코넛은 100g당 230kcal에 지방이 23.8g이나 함유돼 있다. 코코넛의 지방은 대부분 중쇄포화지방으로 구성돼 간에서 에너지로 빠르게 대사, 다른 포화지방과는 달리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적지만, 과다열량 섭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식물성 음료는 영양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는 식물성 음료에 계란이나 바나나나 단호박을 추가해서 먹거나, 오후 3~4시쯤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또 저녁 야식 유혹이 있다면 이를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이어트의 기본, 지방을 태우는 몸 만들어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지방은 빼고 근육은 유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요요 위험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① 정제 탄수화물 끊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몸이 방금 섭취한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쓴다.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탕·액상과당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 정제탄수화물은 과다섭취하면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하고 내장지방이 축적된다. 다이어트 첫 3일간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50g 이하로 철저히 제한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 매끼 단백질 챙겨 먹기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몸은 우선 근육의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 사용한다. 그러다가 근육 단백을 계속 쓸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쓴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므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몸무게 1kg당 1.2~1.5g을 권장한다. 한 번에 소화·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백질은 아침·점심·간식·저녁 이렇게 4회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고기, 생선, 해산물, 콩·두부, 달걀, 플레인 요거트 등은 체지방 감량에 좋은 고단백 식품이다.

③ 고강도 인터벌 운동하기

건강을 위해서는 1주일에 150분 운동을 하면 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란 말 그대로 고강도 운동을 짧게 짧게 반복하는 운동법이다.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1~2분간 하고 다시 1~3분간 가볍게 한다. 이를 3~7회 반복하면 좋다. 여기에 근육 운동을 더해야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다.

범블비는 사람에 관한 꿈을 꾸는가

- 영화 「범블비」 속 법률 이야기



해군 법무관 배연관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이 모든 것이 사라질거야 마치 빛속의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과 신체구조를 가졌으나 4년이라는 짧은 수명을 지닌 인공지능생명체들이 인간과 동일한 대우를 갈구하며 항쟁하는 21세기를 그린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로이 베티가 남긴 유언입니다. 굳이 블레이드 러너가 아니어도, 인공지능생명체가 인간의 조건이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다양한 창작물을 독자들께서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사람과 달리 기계로 된 신체를 가졌지만, 사람보다 더 친숙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감정 표현에도 능숙한 노란 로봇인 '범블비'가 주인공인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화의 중심 인물(?)인 범블비를 인간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의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1. 범블비는 권리의 객체에 불과한가

주인공 찰리는 선물로 받은 중고 자동차(로 위장한 범블비)를 군사상의 이유로 빼앗기고, 군인들은 이런 범블비를 잔혹하게 실험하고 고문합니다. 그럼에도 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왓슨은 남자친구와 함께 범블비를 구하기 위해 미군 및 외계의 침략자와 맞섭니다.

그런데 잠깐... 범블비를 되찾으러 가는 찰리는(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 범블비를 구하러 가는 걸까요. 자신의 소유물인 범블비를 불법적으로 압수하여 파괴하고 있으므로, 소유의 객체인 범블비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력구제에 나선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혹시 범블비 자신이나 제 3자가 이러한 고문행위에 대해 '비 인권적이고 비 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그 부당함에 항의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를 택하셨다면, "범블비는 외계에서 온 기계생명체로서, 사람은 아니지만 소유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전제에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까요, 영화 마지막에 범블비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찰리를 떠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2. 범블비는 사람과 같다 할 수 있는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범블비와 같은 기계 생명체를 '사람'과 같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유기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로봇감과 범블비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로봇감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음이 분명하고, 동료 경관이나 가족에게는 '머피'라고 불리며 사람으로 대우 받고 있으며, 유기체인 신체의 일부는 남아있고, 이성과 감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무기에 대한 소유의사도 표시합니다.(이런 모습은 2014년 버전에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계장치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로봇감은 사람이 아니



고 회사의 재산이다”라는 영화 속의 강경론자들은, 로보캡과 같은 사이보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지금도 심장박동 조절기, 인공호흡기, 생명유지장치 등의 기계장치에 의존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반박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결국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옮겨 담은 사이보그는 사람과 가깝다는데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범블비는 어떨까요? 탄생의 출발점이 사람을 통하지 않았고, 무기물로 이루어진 신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범블비는 로보캡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로보캡은 사

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범블비가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속에서 표현되는 범블비는 사람처럼 행동할 뿐 아니라, 영화 속 누구보다도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중시하는 등 로보캡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더욱 인간적으로 표현됩니다. 유기체적 특성 유무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갈라야 한다는 주장은, 물리적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의 비판을 받거나, 그보다 더 후대에는 ‘혹인은 피부색이 다르므로 사람이 아니라’던 19세기 미국의 노예제 옹호론과 같은 사고로 취급될지도 모릅니다.



현행법의 기준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권리의 객체에 불과하거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도 없으며 사람처럼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번 세기 말에도 지금의 법이 규범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3.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극단적으로 보면, 미래의 어느날 범블비와 같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이 창조하였다는 점,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 사람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람과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이버세계나 가상현실이 더욱 발달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과 자신의 차이점을 진지하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게임 NPC들은 스스로를 유지나 운영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 이라 생각하면서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세계의 종말로, 캐릭터 삭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삭제되는 NPC 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서버의 전기 신호처럼 사라질거야, 삭제될 시간이야” 인공지능이 진심을 담아 저렇게 슬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4. 범블비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게 될까?

지금까지의 법학은 사람을 ‘자연인’으로서 아주 좁게 정의한 후, 능력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거나 제한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법적 기준에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에 이성과 감정을 갖추고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것을 욕망하며 인간의 곁에 서려할 때 답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법의 기준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권리의 객체(물건이나 특허권)에 불과하거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도 없으며 사람처럼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번 세기 말에도 지금의 법이 규범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는 현행법 밖에서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통합을 위한 새로운 답을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법률가들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 동성 결혼 등에 관한 고민을 하고 나름의 답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앞에서 사람의 조건, 인공지능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법전문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본격적으로 진행돼



법전문협의회는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의 실무위원회(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실무위원회, 법전문 성적평가 및 평가제도 실무위원회, 법전문협의회 운영체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실무위원회는 지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영역별 추진 사항에 따른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실무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5일 '법전문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합숙 진행

지난 2월 18일(월)부터 3박 4일간 2019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합숙이 진행됐다. 출제합숙에는 총괄위원장이인 이형규 전 법전문협의회 이사장(한양대)을 비롯해 영역별 위원장과 출제위원 84명이 참여했다. 이번 출제합숙은 올해 6월(제1차)과 8월(제2차)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영역별 위원장에는 문재완 원장(공법/한국외대), 민만기 원장(형사법/성균관대), 구재균 원장(민사법/아주대), 안강현 원장(선택과목/연세대)이 임명됐다.

법전문협의회 이사회 & 총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45차 이사회 및 제47차 총회가 25개교 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난 2월 27일(수)에 개최되었다. 제47차 총회에서는 법전문협의회 임원 선임, 2020학년도 법전문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8년 회계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서에 대한 심의·의결과 법전문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7~8대 이형규 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ALL ABOUT LAW SCHOOL



법학적성시험 개요

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활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어학 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필수 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학생선발))

3.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함.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논술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전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한다.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4. 2020학년도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점수체제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1	언어이해	30(객관식)	09:00 ~ 10:10 (70분)	45	9	0~90
2	추리논증	40(객관식)	10:45 ~ 12:50 (125분)	60	12	0~120
점심시간			12:50 ~ 13:50	-	-	-
3	논술	2	14:00 ~ 15:50 (110분)	-	-	-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	-

5.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9.7.14.(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 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험표 교부 시(7.1~7.14)에 배정된 학교 확인

6.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일정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2019.01.24(목)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19.05.27(월) ~ 06.05(수)	원서 접수	http://www.leet.or.kr
2019.07.01(월) ~ 07.14(일)	수험표 교부	
2019.07.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9.08.14.(수)	성적 발표	http://www.leet.or.kr
2019.08월 말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7. 응시수수료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 ※ 응시수수료 면제, 편의지원 사항 및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은 6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기본 방향 및 시험 영역 소개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 문항 분류표

내용 영역	문항 유형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 기존의 '주제, 요지, 구조 파악'과 '의도, 관점, 입장 파악'을 통합함

(1) 주제, 구조, 관점 파악

- 제시문의 주제나 구조와 전개 방식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글쓴이 포함)이나 이론의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2)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3)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4)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 문항 분류표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논리학·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1) 언어 추리

- 함축 및 귀결: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함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 원리 적용: 규범 및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하여 올바르게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 사실관계 추리: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함

(2) 모형 추리

- 형식적 추리: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함
- 논리게임: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제시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수리 추리: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추리나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3) 논증 분석

- 명시적 요소 분석: 논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전제들과 결론을 찾아내고, 전제들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암묵적 요소 분석: 논증이나 추리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전제들을 찾아내어 완전한 논증이나 완전한 추리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구조 분석: 논증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4) 논쟁 및 반론

- 논쟁 분석 및 평가: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며, 논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반론 구성: 주어진 논쟁의 상황에 참여하여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오류: 잘못된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5)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 논증 평가: 주어진 논증의 적절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강화 또는 약화: 새로운 정보나 증거의 추가가 기존의 논증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문제해결: 옳다고 믿는 가설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틀린 역설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라. 논술 영역

- 사례형 문항을 통해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평가 목표 분류표

내용 영역	인지 활동 유형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논증	비판	전개	표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복합							

(1) 분석

- 논제 분석: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 분석: 주어진 사례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2) 구성

-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함
- 비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및 판단 능력을 측정함
- 전개: 심층적 및 독창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함
-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함

[언어이해] 예시 문항 (2019학년도)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0년대 이후 **온톨로지**(ontology)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마다 ‘온톨로지’란 용어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다. 여기서 ‘관심 영역’은 특정 영역 중심적이라는 것을, ‘공유된’은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개념화’는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인 것이다. 또 ‘형식적’은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온톨로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명시적인 명세’는 일종의 공학적 구조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온톨로지를 사전과 비교하면 ‘개념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전에는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 뜻풀이, 동의어, 반대어 등 언어적 특성들이 정리되어 있다. 온톨로지에는 표제어 대신 개념이, 그리고 언어적 특성들 대신 개념들 간 논리적 특성들이 기록된다. ‘개념(class)’은 어떤 공통된 속성들을 공유하는 ‘개체들(instances)’의 집합이고,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이다. 온톨로지에서 개념은 관계를 통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된다. 필수적인 관계는 개념 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상속 관계이다. 상속 관계에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예컨대 ‘스누피’라는 특정 개체가 속한 견종 ‘몰티즈’라는 개념은 ‘개’의 하위 개념이므로, ‘몰티즈’는 상위 개념인 ‘개’가 가진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관계로 부분-전체 관계가 있다. 이외에도 온톨로지에는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기록할 수 있다.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대부분 일차 술어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차 술어 논리는 ‘모든’과 ‘어떤’을 변수와 함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 예컨대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오직 얇고 바삭한 베이스만을 갖는다.”를 일차 술어 논리로 옮기면 “모든 x에 대해, 만약 x가 진짜 이

탈리아 피자라면, 얇고 바삭한 베이스인 어떤 y가 존재하고 x는 y를 베이스로 갖는다.”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니다. 일차 술어 논리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표현된 온톨로지를 막상 기계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일차 술어 논리에 각종 제약을 두어 표현력을 줄이는 대신 취급을 용이하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권고안인 ‘웹 온톨로지 언어’ OWL에는 Lite, DL, Full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표현력이 커진다. 즉 OWL DL은 OWL Lite의 확장이고 OWL Full은 OWL DL의 확장이다. OWL DL까지는 계산학적 완전성과 결정 가능성이 보장된다. 이는 OWL DL로 표현된 온톨로지에서는 추론 엔진이 유한한 시간 내에 항상 해를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OWL을 쓰면 복잡하고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OWL은 너무 어렵다. 이로 인해 그 이름과는 달리, 웹에서 OWL이 널리 쓰이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전문 지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적 표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OWL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의료 영역 온톨로지인 NCI 시소러스는 OWL 포맷으로도 제공되는데, 이것은 약 4만 개의 개념과 백 개 이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의료 영역은 일찍부터 여러 그룹에서 각기 목적에 맞는 온톨로지를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UMLS, SNOMED-CT 등이 있다.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구축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984년 개발이 시작된 Cyc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고자 하는 대규모 온톨로지다. 지식공학자 소와(Sowa)는 철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상위 수준 온톨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려면 시간, 공간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들을 다루어야만 하는데, 이는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깊이 사유했기 때문이다.

※문제 전문은 LEET 홈페이지(www.lee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2.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해 설계된 인공물이다.
- ② 대상 체계의 개념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 ③ 실제 사용되려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④ 개념과 그 개념에 속한 개체들은 상속 관계에 의해서로 연결된다.
- ⑤ 동일한 영역에서도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온톨로지가 구축될 수 있다.

[정답] ④
 [문항 유형] 과학기술 - 주제, 구조, 관점 파악
 [난이도] 상

23. 온톨로지 표현 언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동일한 온톨로지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표현력이 동등해야 한다.

ㄴ. 일차 술어 논리 표현 “모든 x에 대해, x가 빵이면 x는 장미이다.”는 ‘빵’이 상위 개념, ‘장미’가 하위 개념인 상속 관계를 나타낸다.

ㄷ. 계산학적 완전성에 대한 보장 없이 최대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구축을 원하는 사용자는 OWL Lite보다는 OWL Full을 사용할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③
 [문항 유형] 과학기술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난이도] 중

24.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소와의 상위 수준 온톨로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소와의 상위 수준 온톨로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을, ⊥는 공집합을 뜻한다. ↑ 바로 아래 원초적 개념으로 ‘Independent’와 ‘Relative’와 ‘Mediating’, ‘Physical’과 ‘Abstract’, ‘Continuant’와 ‘Occurrent’ 이렇게 7가지가 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두 개념 중 위쪽이 상위 개념, 아래쪽이 하위 개념이다.

한편 상속 관계는 추이성(transitivity)을 갖는 대표적인 관계다. 즉 A, B, C가 각각 개념이라 할 때, 하위 개념 A가 상위 개념 B와 상속 관계를 맺고 하위 개념 B가 상위 개념 C와 상속 관계를 맺으면, 하위 개념 A는 상위 개념 C와 상속 관계를 맺는다.

- ① 상위 개념으로 원초적 개념을 단 한 개만 갖는 개념은 없고, 오직 2개의 원초적 개념을 갖는 개념은 모두 6개다.
- ② ↑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므로 이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에는 어떠한 개체도 속하지 않으므로 이 개념은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는다.
- ③ ‘Continuant’와 ‘Occurrent’의 공통 하위 개념은 오직 ⊥뿐이므로, ‘Continuant’의 속성과 ‘Occurrent’의 속성을 모두 갖는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Object’는 ‘Actuality’의 하위 개념이고 또한 ‘Continuant’의 하위 개념이기도 하므로, ‘Actuality’의 속성과 ‘Continuant’의 속성을 모두 물려받는다.
- ⑤ ‘Process’는 ‘Actuality’의 하위 개념이고 ‘Actuality’는 ‘Physical’의 하위 개념인데, 상속 관계는 추이성을 가지므로, ‘Process’는 ‘Physical’의 하위 개념이다.

[정답] ②
 [문항 유형] 과학기술 -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난이도] 상

[추리논증] 예시 문항 (2019학년도)

7. 원님 갑이 재판에서 채택할 진술을 <사례>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님 갑은 고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였다.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들이 많이 제출되어 재판이 지연되자, 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거들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갑은 용의자의 평소 행실에 관한 진술은 재판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은 증인의 평소 언행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채택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받아들였다.

첫째, 증인의 평소 언행의 진실성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은 평소 고을에서의 평판에만 한정하고, 과거에 특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채택하지 않는다.

둘째, 증인이 예전에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술은 채택하기로 한다.

셋째, 증인의 평소 언행의 진실성을 모든 사건에서 다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증인이 진실하다’는 진술은 다른 사람이 ‘증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진술하거나 ‘증인이 예전에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한 때에 비로소 채택한다.

<사례>

현재 갑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에서 갑돌이는 <혐의 1> 갑순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려 갑순이 집의 외양간을 태웠고, <혐의 2> 그 사실이 소문나면 주인마님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 불이 나던 날 밤 ‘을돌이가 갑순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1>과 관련하여 갑이 갑돌이에게 그날의 행적에 대하여 묻자, 갑돌이는 ㉠“저는 주변에서 매우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혐의 2>와 관련하여 갑돌이의 친구 마당쇠가 증인으로 나와 “갑돌이는 거짓말을 안 하는 진실한 놈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대장장이가 증인으로 나와 ㉡“예전에 마당쇠가 을순이에게 거짓말을 해서 을순이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일이 있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갑이 을돌이를 증인으로 불러 그날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자 을돌이는 “그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다음 증인 병돌이는 ㉢“예전에 을돌이가 아랫동네 살인 사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여 곤장 다섯 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다른 증인 방물장수는 ㉣“을돌이가 매우 진실하다는 소문이 윗마을까지 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③
 [문항 유형] 규범 - 언어 추리
 [난이도] 중

33. A, B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로버트 밀리컨은 전하의 기본단위를 측정할 목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미국 물리학자이다. 그는 원통형 실린더 내부에 작은 기름방울들을 분사하고,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 주어 기름방울이 전하를 띠게 한 후 중력과 전기력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기름방울의 운동을 관찰함으로써 전하의 값을 알아냈다. 노벨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913년 논문에서 밀리컨은 58개의 기름방울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밀리컨의 실험 노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는 1911년 10월부터 1912년 4월까지 100개 이상의 기름방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기름방울 실험에 대해 '아름다움', '뭔가 잘못됨', '최고의 결과' 등의 논평을 달아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A: 밀리컨은 자신의 이론에 맞는 좋은 데이터만 남기고 이론에 잘 들어맞지 않는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으로 '데이터 요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B: 밀리컨이 일부 데이터를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이론에 불리해서가 아니라 실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최적으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데이터여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는 통상적인 과학 활동의 일부이다.

< 보기 >

- ㄱ.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기름방울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찰만 이루어졌고 전하량의 계산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A는 강화된다.
- ㄴ. 논문에 포함된 58개 기름방울의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와 실험 노트에 기록된 모든 기름방울의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단위 전하량의 계산 결과가 서로 많이 달랐다면, A는 약화된다.
- ㄷ.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대부분이 기름방울의 크기가 크거나 측정 오차가 큰 경우 등 실험 조건이 완벽하지 못한 것들이었다면, B는 강화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문항 유형] 과학기술 -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난이도] 하

[논술] 예시 문항 (2019학년도)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 조건 >

- 1.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제시할 것
- 2.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반박할 것
- 3. <정관>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
- 4. <정관>을 활용할 때는 '정관-가', '정관-나'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 사례 >

A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다. A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규칙과 절차를 협동조합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이러한 변화에 A가 제때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관 개정안은 A의 목표로 이윤 추구의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정관이 정한 규칙 및 절차 준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관 개정안은 A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A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반대한다. 또한 정관 개정안은 권한 배분의 취지를 약화시켜 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정관 개정을 지지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은 A 역시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권한 배분의 취지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정관: 현 정관의 주요 내용 >

- 가) A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A는 모든 조합원의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참여와 결정으로 운영된다.
- 다) A의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 원리를 따른다.
- 라) A의 운영은 정관이 정한 규칙 및 절차에 구속된다.
- 마) 조합원은 정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이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 수 있다.
- 바) A의 조합원총회, 이사회, 감사의 기능과 권한은 분리된다.
- 사) A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총회 소집은 총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 아) 이사회는 A의 경영을 담당한다.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둔다. 이사장은 A를 대표한다.
- 자) 감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사전 및 사후 감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감사는 조합원총회에 이사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차)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경영 실현을 위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신분은 보장된다.

[문항 유형] 사례형
 [난이도] 중

로스쿨 입학수기



권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교의 입시 기조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수강 사실이나 낮은 학점에 대해 자기소개서의 해당 항목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에 21학점을 채워 들으면서 3개의 학회 활동과 조교 활동까지 병행하려 하는 무리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 때문에 수강을 포기하고 이후 재수강한 과목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학점 관리를 위해 꾀수를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논문,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그 과정을 소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같은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이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전공 분야, 혹은 그 이외의 분야를 탐구했다는 것은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학부생의 자기소개서를 꽤나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적성시험(리트)

제가 리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은 출제자와의 '핀트'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축적된 지식을 평가하는 다른 여러 시험과는 달리 리트는 독해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하기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수준 높은 책을 읽거나 논리학을 공부하는 등 기초를 다지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지만, 4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리트 준비를 시작했던 제게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점 관리

학점 관리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조언은, 학점은 '고고익선' 즉 높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F를 받거나 재수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이수(F 학점)나 재수강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도 있고, 미이수 및 재수강 과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만 아니면 문제 삼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1기로 입학한 권혁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의 합격 소식을 들은 뒤 로스쿨 입학 전형이나 법학적성시험(리트) 준비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습니 다. 아마 <로스쿨 창>의 독자분들 중에도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속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학 수기는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로스쿨 진학 준비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해 준 내용을 정리하고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로스쿨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학부 학점, 법학적 성시험(리트),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전체적인 논리 구조나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표현 한두 개를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해서 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추 리논증 2번 문제는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제자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의 고민과 시행착오 뒤에 내린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사전적 의미와 엄밀한 논증을 고수할 것인지 혹은 일상적인 의미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받아들일 것인지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각자의 사고 방식의 '영점 조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의고사의 활용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의고사를 시간 관리와 집중력 유지를 위한 연습용 문제 정도로만 활용하고 그 내용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트를 출제하는 출제위원과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학원 강사의 '핀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전 시험의 분위기와 긴장감을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 현장 모의고사에 응시하거나 2~3학년 때 미리 시험 삼아 리트에 응시해 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 모의고사를 보지 않은 채로 실전 시험을 치렀었는데, 혼자 학교 열람실에서 기출 문제를 풀 때와는 전혀 다른 압박감이 느껴져서 처음 15분 정도는 문제에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한 가지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부 전공이나 로스쿨 지원 전까지의 경험에 따

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실무 경험이나 인턴 경험은 전혀 없었고, 지원자들 사이에서 '특이 정성'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경력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 스스로를 '이미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포장하기보다는 '로스쿨에서의 공부를 통해 능력 있는 법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달리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을 만한 이색적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 건축, 디자인 등 법조계와 로스쿨에 드문 전공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관련 분야의 특허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식으로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소서 스토리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학회 및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역시 좋은 이야기거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소개서가 화려한 스펙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래의 로스쿨 학생' 혹은 '미래의 법조인'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도했던 방법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개인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지원하려는 학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의 경험과 생각을 참고하여 로스쿨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쁘고 보람찰 것 같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나름의 이야기를 갖고 로스쿨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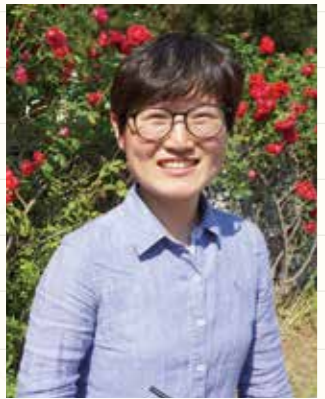
로스쿨 합격 노하우



합격을 좌우하는 전략짜기

자신이 추구하는 법조인의 모습, 이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역량과 이에 부합하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대 학생의 경우 역대 입학자들 중 해외대 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8월에 개최되는 공동입학설명회를 적극 활용할 것! 설명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자신의 역량과 부합하는 학교를 매의 눈으로 찾아야 한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호



입학한 후의 청사진을 그린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최대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과거의 수상경력이나 대외 활동 등 해냈던 일보다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연차별, 학기별로 작성했다.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 오히려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면접과 관련해서는 면접 관련 책자보다 신문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은 바로바로 찾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영

최대한 문제를 많이 그리고 집중하여 풀어볼 것

수회 분이 쌓여있는 리트 기출문제 및 시중에 출간된 모의문제들을 가능한 모두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문제를 풀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약한 유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제를 푸는 때 순간마다 실제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맞추어 집중하여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조급함이라는 마음과 미리 친해져 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성용



최신 판결 스크랩하기

로스쿨 입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화제판결'들을 모아놓은 신문 기사들을 틈틈이 챙겨보았는데, 그러한 판결 자체가 면접에서 출제된 것은 아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학을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일견 불합리 해 보이는 판결들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나름 고민해 봄으로써, 면접장 내에서 제시받은 낯선 주제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우



신체리듬과 멘탈 관리가 관건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리트 당일처럼 생활했다. 일어나는 시간을 리트 당일과 동일하게 맞춘 후, 언어이해 영역을 풀고 잠깐의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추리논증 영역을 풀었다.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신체를 시험 당일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두고 멘탈관리에 들어갔다. 리트는 고시처럼 외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첫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넘기는 멘탈을 가져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정민

면접의 핵심은 일관된 주장과 힘 있는 논리

면접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고른 뒤 모의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힘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되 무리한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여기서 잠깐

Q.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들의 생생한 입학 수기를 더 보고 싶다면?

A. 정기간행물 <로스쿨 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 자료실 - <로스쿨 창>

로스쿨 개요

» 입학정원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다.

구 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이상 확보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습저널 3개국 30종 이상 확보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한 번에 수용(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 가능(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으로 유지
- 로스쿨이 학생에게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 교육과정개요

이론 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구분	내용
공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구분	내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 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구분	내용
법조윤리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어링(Lawyring)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취,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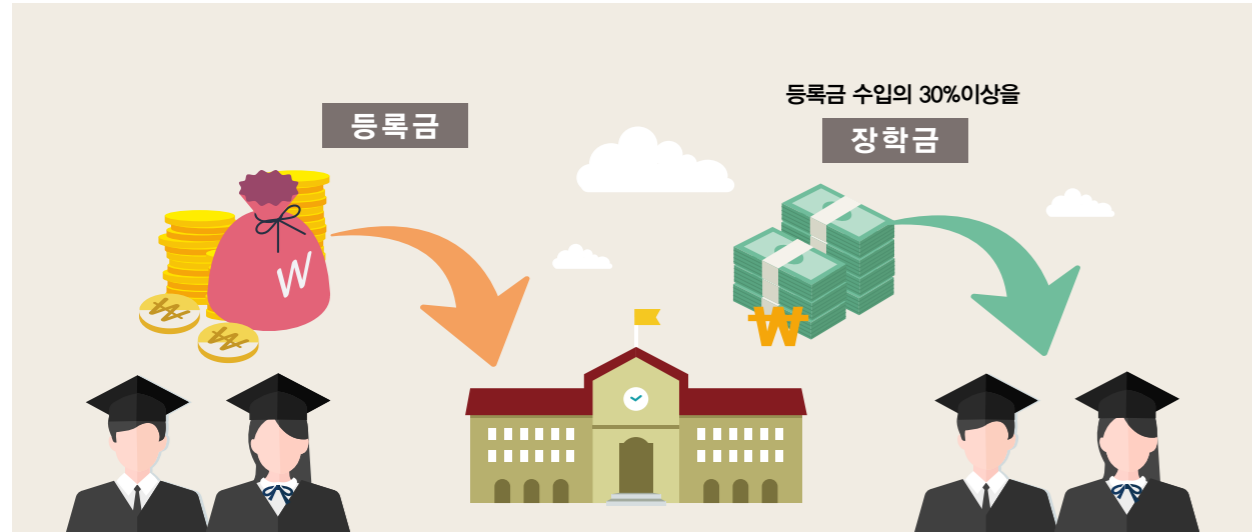
학교명	내용	학교명	내용
강원대	환경법	영남대	공익·인권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경북대	IT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전남대	공익인권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전북대	동북아법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제주대	국제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중앙대	문화법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충남대	지적재산권
서울시립대	조세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 3년의 교육과정 중 6개(각기 다른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 풍부한 국제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장학금 제도

» 법전원의 장학 제도



* 각 법전원은 의무적으로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2018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지원 현황

재학생 수 (명)	총 등록금 (백만원)	장학금 수혜 현황		장학금 지원 현황	
		수혜 인원(명)	비율(%)	금액(백만원)	지급 비율(%)
12,117	85,197	6,975	57.6%	29,523	34.7%

*18학년도 재학생 12,117명 가운데 6,975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등록금 수혜율은 57.6%로 나타났다.

* 총 등록금액 852억 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295억 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율은 34.7%이다.

» 2018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세부 현황

수혜 인원 (명)	총 지원액 (백만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기타 자율 장학금		
		인원 (명)	금액 (백만원)	비율 (%)	인원 (명)	금액 (백만원)	비율 (%)
6,975	85,197	3,687	22,520	76.3%	3,288	7,003	23.7%

»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소득구간의 학생 또한 학교별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 '19.2.28)

» 장학금 지원 순위 현황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전액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 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참고]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17년도)

단위:천원 /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14,238	5,177	36.9	9,061
의학전문대학원	15,517	2,865	17.7	15,517
경영전문대학원	24,940	4,430	18.2	20,511

데이터 출처: 대학알리미

* 법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보다 등록금액이 적으나 장학금 비율은 월등하게 높아 실질등록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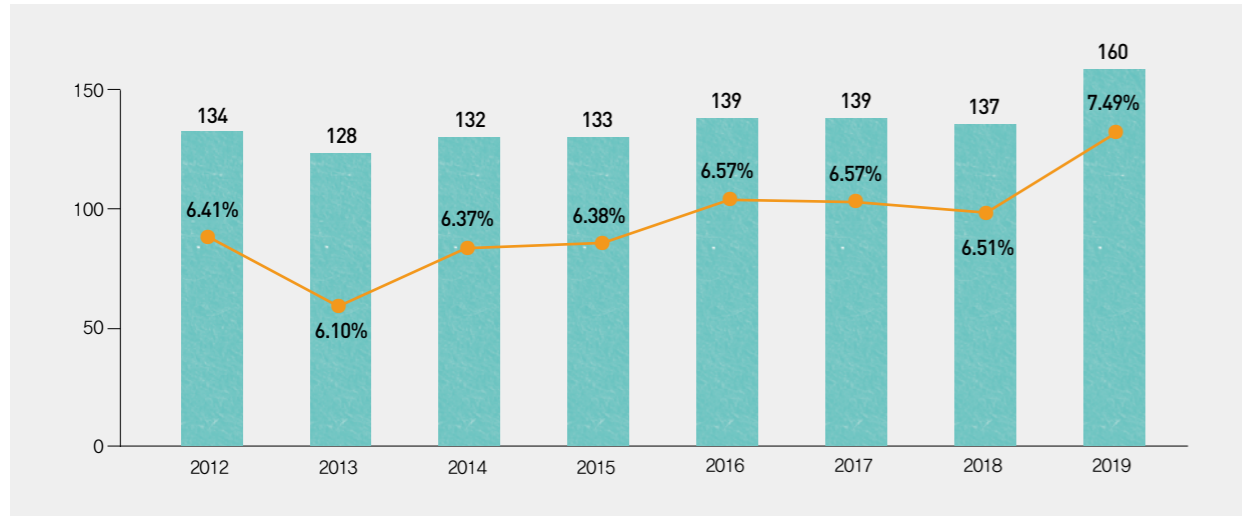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 특별전형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각 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하였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 1,467명(2009년~2019년)

• 선발현황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 7% 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급(학교별 상이)

• 선발대상 :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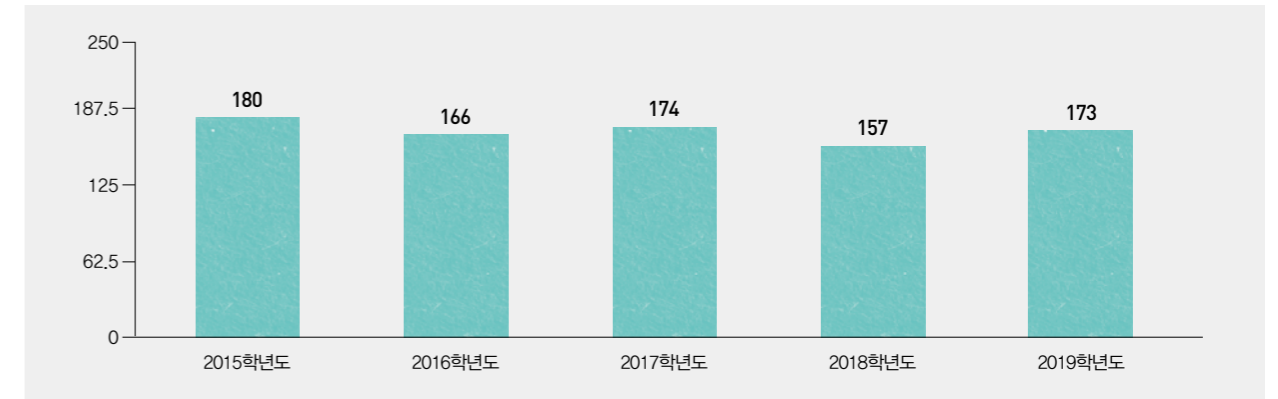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에 한함)
경제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강원, 제주(2개교) : 입학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자의 20% 이상 선발



특별전형 사례 소개



김재왕 변호사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김재왕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재학 중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연구자의 길을 포기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 전문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2015-11-02)

김원영 변호사

김원영 변호사는 어린시절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열 다섯 살때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다.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중학부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실습을 통해 연수기관에서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1,2,3학년생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등)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등 기업(삼성, LG, KT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실습기간	동계/하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 유관기관의 실무강의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검사 등 현직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기관	과목명	파견인원(2018년도)	비고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실무(1학기) 형사재판실무(2학기)	24명	강의지원은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울권역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외 권역은 법전원 소속지역 법원 지법부장을 파견
법무부	검찰실무	6명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당해연도 2학기에서 차년도 1학기 또는 당해연도 1~2학기를 원칙으로 함
경찰청	경찰실무	8명	1학기 또는 2학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법전원에 파견하여 운영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률상담(건)	1,284	2,147	2,204	2,080
소송참여(건)	235	240	424	334

변호사 시험

»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

»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참고] 변호사시험 통계 - 2018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남성	여성
남성 응시자 1,843명 중 906명 합격(49.16%)	여성 응시자 1,397명 중 693명 합격(49.61%)
법학전공	법학 비전공
응시자 1,651명 중 787명 합격(47.67%)	응시자 1,589명 중 812명 합격(51.10%)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명

구분	'15년(4기)	'16년(5기)	'17년(6기)	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	1,581	1,600	4,746
취업대상자	1,540	1,502	1,396	4,438
취업자	1,390	1,375	1,256	4,021
취업률(%)	90.3	91.5	90.0	90.6

*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게 되며, 평균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분야 현황

단위:명

기관	취업인원	기관	취업인원
법원	72	국가기관	48
검찰	36	지방자치단체	4
군법무관	74	공공단체	9
공익법무관	123	공기업	18
법무법인	526	사기업	72
공동법률사무소	115	기타	28
단독사무소	131	총계	1,256

* 졸업생들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 법조인으로서의 뜻을 펼치고 있다.

* 특히 해가 갈수록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의 진출이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청운 판사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권력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에 좌우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들이나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함혜란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임명하는 위촉 계약직이고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고등법원별로 선발합니다. 해당 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면 오직 그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국선변호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30여건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사선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동일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용혜 변호사

“저는 미디어산업과 관련된 1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화콘텐츠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팀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D, 작가, 감독, 가수, 배우, 영화제작자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제작컨설팅, 방송포맷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상생협력, 미디어기업 투자파문, 미디어 업계 제작환경 개선 등 문화산업계가 맞닥뜨리는 법률적 쟁점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하고, 각종 법적 자문에도 응합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농림축산식품, 환경, 의약 분야의 사건이 있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함께 회의를 하며 고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은 다른 변호사가 하더라도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김민형 변호사

“정부법무공단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고 고문을 맡기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 사회문화, 국토산업부, 조세팀 등 의뢰기관의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분류된 업무에 따라서 팀이 나뉘는데, 제 경우에는 1년차 때는 국토산업부팀에 있었고 현재는 사회문화팀에 있습니다. 담당 기관들의 송무, 자문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해당 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더욱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가 가능해 집니다.”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 시험 일시, 장소 및 원서접수일

시험 일시	2019.7.14.(일) 09:00
시험 장소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
원서 접수	2019.5.27.(월) 09시 ~ 06.05(수) 18시까지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온라인 접수만 실시)

■ 응시수수료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를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6월 3일 ~ 2019년 6월 5일 [6. 5.(수) 우편소인까지 인정]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인정, 방문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수험생 본인 명의, ①~⑥ 중 택 1)	(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① 수급자 증명서	⑤ 차상위 본인부담감감대상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 수험생 본인 명의의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문서"만 인정

■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접수마감일~6월 5일까지 : 100%(248,000원)
 -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구분	취소기간	환불 금액
1차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6일~6월 12일)	60%(148,800원)
2차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3일~6월 26일)	50%(124,000원)
3차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7일~7월 10일)	40%(99,200원)
최종	시험 3일 전부터(7월 11일~)	0%(반환불가)

■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8월 14일(수)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이번 시험부터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 범위 0~90인 표준점수를,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 범위 0~120인 표준점수를 사용함.
 - ※ '18. 12. 11.(화)에 발표한 「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안내」 참조
 -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함.

■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 수험생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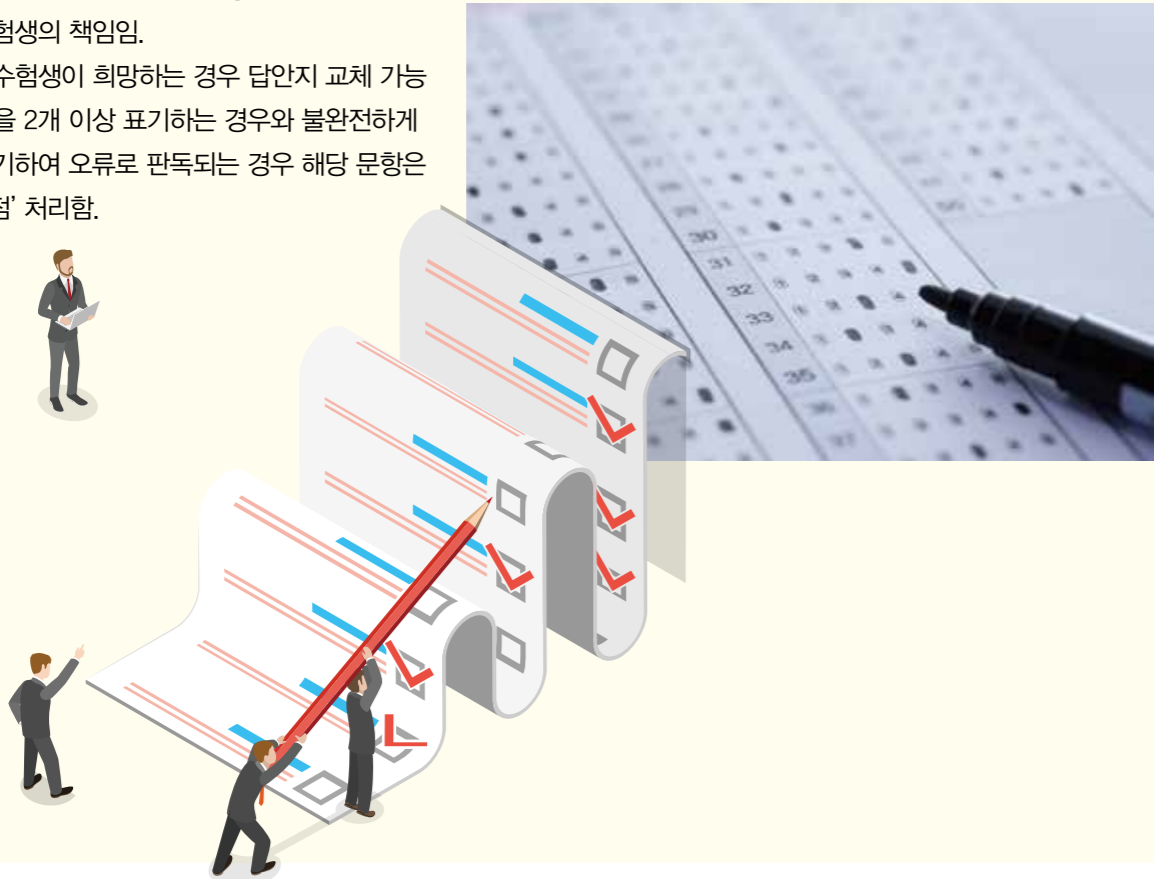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미디어플레이어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 (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피커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지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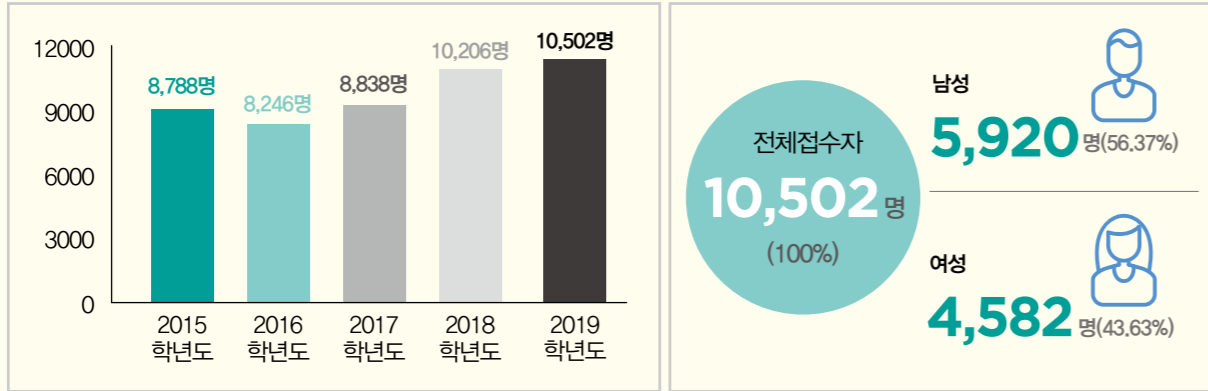
경미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시험 점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여 지정된 시간 이후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심각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2019학년도 LEET 원서접수 결과

연도별 원서접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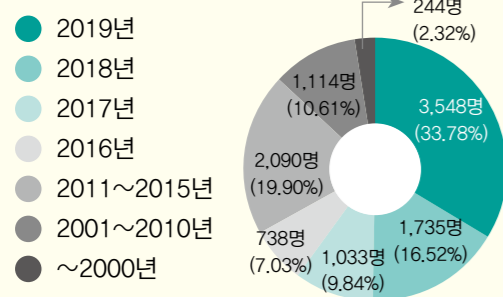


계열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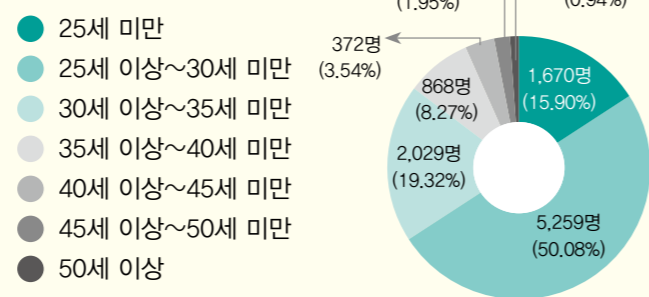
단위 : 명 / %

공학	농학	법학	사범	사회	상경	신학	약학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	기타
690	43	2,496	417	1,901	2,186	30	52	132	73	1,781	352	349
6.57	0.41	23.77	3.97	18.10	20.82	0.29	0.50	1.26	0.70	16.96	3.35	3.32

졸업연도별 현황



연령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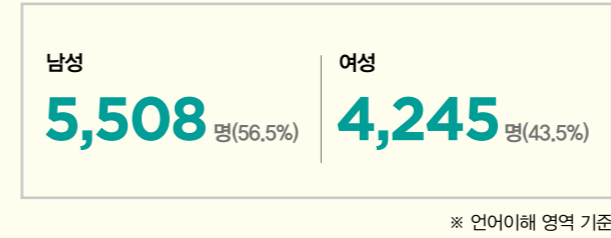
시험 지구별

단위 :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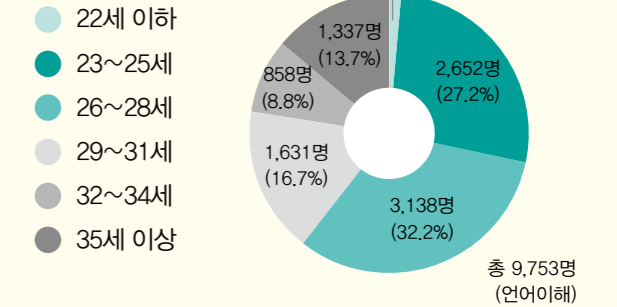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7,816	644	626	413	300	193	374	89	47
74.42	6.13	5.96	3.93	2.86	1.84	3.56	0.85	0.45

2019학년도 LEET 채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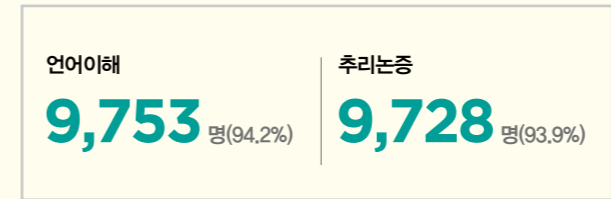
성별 응시자 현황



연령별 응시자



영역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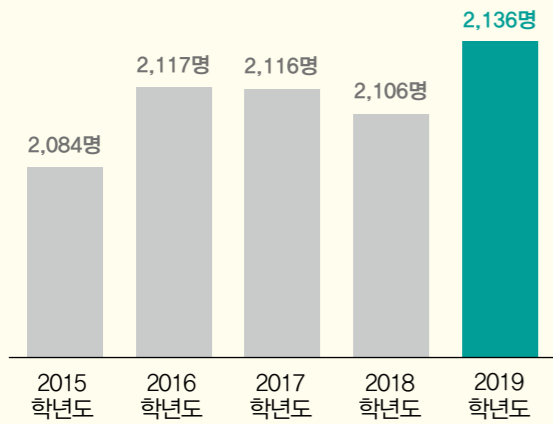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9,753명 중에서 법학계열이 2,321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2,023명(20.7%), 사회계열 1,790명(18.4%), 인문계열 1,657명(17.0%), 공학계열 638명(6.5%), 사범계열 383명(3.9%), 자연계열 319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표준점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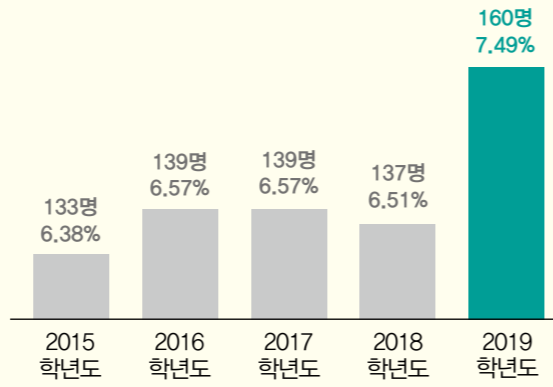
표준점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5.0 이상 ~ 80.0 미만	20	0.2	0.2	-	-	-
70.0 이상 ~ 75.0 미만	138	1.4	1.6	41	0.4	0.4
65.0 이상 ~ 70.0 미만	426	4.4	6.0	385	4.0	4.4
60.0 이상 ~ 65.0 미만	883	9.1	15.0	978	10.1	14.4
55.0 이상 ~ 60.0 미만	1,358	13.9	29.0	1,607	16.5	31.0
50.0 이상 ~ 55.0 미만	1,817	18.6	47.6	2,397	24.6	55.6
45.0 이상 ~ 50.0 미만	1,871	19.2	66.8	1,638	16.8	72.4
40.0 이상 ~ 45.0 미만	1,452	14.9	81.7	1,179	12.1	84.5
35.0 이상 ~ 40.0 미만	1,243	12.7	94.4	755	7.8	92.3
30.0 이상 ~ 35.0 미만	342	3.5	97.9	397	4.1	96.4
25.0 이상 ~ 30.0 미만	139	1.4	99.3	229	2.4	98.7
20.0 이상 ~ 25.0 미만	48	0.5	99.8	95	1.0	99.7
15.0 이상 ~ 20.0 미만	10	0.1	99.9	24	0.2	100.0
10.0 이상 ~ 15.0 미만	4	0.0	100.0	2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2	0.0	100.0	1	0.0	100.0
계	9,753	100.0		9,728	100.0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전체 합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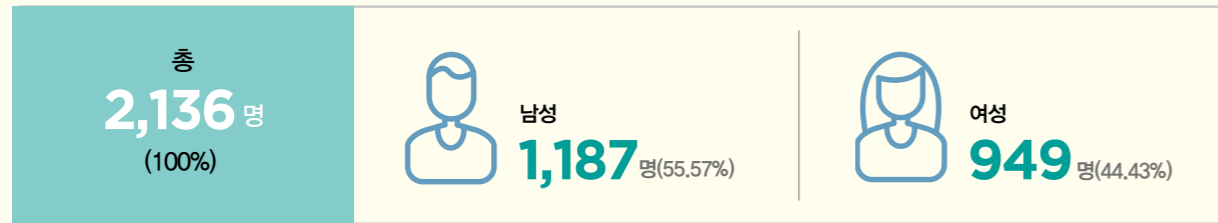


특별전형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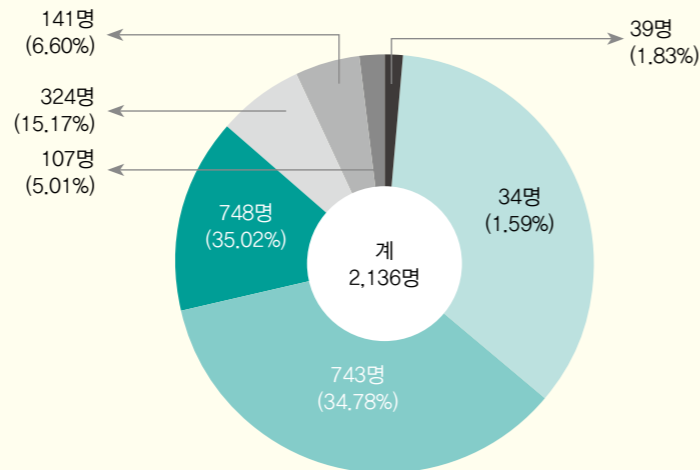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 등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연령별

- 22세 이하
- 23~25세
- 26~28세
- 29~31세
- 32~34세
- 35~40세
- 41세 이상



자교출신 VS. 타교출신

자교출신 478명(22.38%), 타교출신 1,658명(77.62%)

법학사 VS. 비법학사

법학사 394명(18.45%), 비법학사 1,742명(81.55%)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229	135	364	22	8	30	251	143	394	18.45
사회계열	220	233	453	21	22	43	241	255	496	23.22
상경계열	281	186	467	19	9	28	300	195	495	23.17
인문계열	153	193	346	18	14	32	171	207	378	17.70
공학계열	84	22	106	6	0	6	90	22	112	5.24
자연계열	37	32	69	5	2	7	42	34	76	3.56
사범계열	28	41	69	1	3	4	29	44	73	3.42
의학계열	10	4	14	1	1	2	11	5	16	0.75
예체능계열	4	8	12	0	1	1	4	9	13	0.61
약학계열	7	3	10	0	0	0	7	3	10	0.47
신학계열	6	1	7	1	0	1	7	1	8	0.37
농학계열	4	0	4	1	0	1	5	0	5	0.23
기 타	26	29	55	3	2	5	29	31	60	2.81
계	1,089	887	1,976	98	62	160	1,187	949	2,136	100

최종학력별

대학교 졸업자가 1,198명(56.09%), 대학교 졸업예정자(2019년 2월)가 938명(43.91%) 합격하였다. 대학교 졸업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71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직업을 보면 의사 8명, 약사 6명, 기자 5명, 간호사 4명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회계사 13명, 변리사 8명, 노무사 6명의 전문자격 소지자도 확인되었다.(직업 및 전문자격 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019학년도 법전원별 1, 2단계 전형요소 실질반영률

구분	1단계					2단계		
	정량평가(A)			정성평가(B)		정성평가(C)		
	LEET (언어/추리)	학부성적	어학성적	서류심사	LEET(논술)	면접	서류	LEET(논술)
강원대	150%	100%	p	70%		50%		50%
건국대	300%	100%	200%	150%		150%		100%
경북대	150%	100%	100%	50%		70%		30%
경희대	100%	100%	p	100%		100%		
고려대	200%	200%	p	100%		100%		
동아대	300%	100%	200%	200%		100%		100%
부산대(가)	30%	20%	10%			10%	20%	10%
부산대(나)	30%	20%	10%			20%	20%	
서강대	30%	30%	20%	20%		20%		
서울대	100%	100%		50%		50%		참고자료로 활용
서울시립대	15%	20%	20%	20%		20%		5%
성균관대	30%	30%	5%	20%		15%		
아주대	30%	20%	20%		15%		10%	5%
연세대	150%	150%	p	100%		50%		
영남대	300%	100%	100%	200%		200%		100%
원광대	40%	20%	20%			15%	5%	
이화여대	60%	40%	30%	50%		10%		10%
인하대	250%	200%	100%	200%		150%		100%
전남대	100%	100%	100%	100%		50%		50%
전북대	30%	15%	10%	10%		20%		15%
제주대	30%	20%	10%			16%	20%	4%
중앙대	100%	100%	100%	100%		100%		
충남대	120%	100%	100%	30%		40%		20%
충북대	150%	100%	100%	60%		40%		
한국외대	100%	100%	100%	100%	p	100%		
한양대	30%	20%	10%	20%		10%		10%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8. 10. 1(월), 09:00 ~ 5(금), 18:00

대 학 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93	21	214	214				5.22	7.00	5.35	5.35
건국대	37	3	40				40	123	8	131				131	3.32	2.67	3.28				3.2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13	23	236	215	15	230	466	3.87	4.60	3.93	3.84	3.75	3.83	3.88
경희대	55	5	60				60	422	48	470				470	7.67	9.60	7.83				7.83
고려대				111	9	120	120				361	27	388	388				3.25	3.00	3.23	3.23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36	25	361	316	21	337	698	9.08	8.33	9.03	8.54	7.00	8.43	8.73
부산대	65	5	70	46	4	50	120	198	18	216	137	11	148	364	3.05	3.60	3.09	2.98	2.75	2.96	3.03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30	5	135	151	7	158	293	6.84	2.50	6.43	8.39	7.00	8.32	7.33
서울대	139	11	150				150	440	55	495				495	3.17	5.00	3.30				3.30
서울시립대	45	5	50				50	236	30	266				266	5.24	6.00	5.32				5.32
성균관대				111	9	120	120				343	22	365	365				3.09	2.44	3.04	3.0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92	14	206	219	18	237	443	8.35	7.00	8.24	9.52	9.00	9.48	8.86
연세대				111	9	120	120				283	31	314	314				2.55	3.44	2.62	2.6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215	26	241	230	19	249	490	6.72	8.67	6.89	6.97	9.50	7.11	7.00
원광대	30		30	25	5	30	60	277		277	216	39	255	532	9.23		9.23	8.64	7.80	8.50	8.87
이화여대				93	7	100	100				383	32	415	415				4.12	4.57	4.15	4.15
인하대	21	4	25	25		25	50	138	26	164	168		168	332	6.57	6.50	6.56	6.72		6.72	6.64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08	42	250	266		266	516	4.08	4.67	4.17	4.43		4.43	4.30
전북대	37		37	37	6	43	80	238		238	241	40	281	519	6.43		6.43	6.51	6.67	6.53	6.49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76	6	82	60	3	63	145	4.22	3.00	4.10	3.16	3.00	3.15	3.63
중앙대	46	4	50				50	264	27	291				291	5.74	6.75	5.82				5.8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162		162	143	21	164	326	3.24		3.24	3.33	3.00	3.28	3.26
충북대	40		40	25	5	30	70	212		212	131	15	146	358	5.30		5.30	5.24	3.00	4.87	5.11
한국외대	26	4	30	20		20	50	126	13	139	107		107	246	4.85	3.25	4.63	5.35		5.35	4.92
한양대				92	8	100	100				312	35	347	347				3.39	4.38	3.47	3.47
합 계	826	67	893	1,022	85	1,107	2,000	4,206	366	4,572	4,475	377	4,852	9,424	5.09	5.46	5.12	4.38	4.44	4.38	4.71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5월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40 (0/4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70점 [합계 : 320점]	• 1단계 성적 : 32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2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나’군)	• 비법학사 : 20명 이상 • 타 대학 : 24명 이상 • 지역인재 : 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33)250- 6503
건국대 [부동산]	40 (40/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15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이상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비법학사 : 1/3명 이상 • 타 대학 : 1/2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450- 3620
경북대 [IT]	120명 (60/6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30점 • 면접성적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3)950- 5452 입학 관리처 : 053)950- 2765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60명 (60/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21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961- 9218
고려대 [국제법무 (Global Legal Practice)]	120 (0/120)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200점 • 자기소개서 : 100점 • 어학성적 : P/F [합계 : 500점]	• 1단계 성적 : 500점 • 면접성적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3290- 1428 http:// lawschool. korea. ac.kr
동아대 [국제 상거래]	80 (40/4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800점]	• 1단계 성적 : 8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군별 3명씩)	• 비법학사 : 27명 이상 • 타 대학 : 27명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1)200- 8581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부산대 [금융·해운 통상법]	120 (70/50)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자기소개서 : 20점 • 논술성적 : 10점 (‘가’군만) • 면접성적 : (‘가’군 : 10점, ‘나’군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5명 ‘나’군: 4명)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1)510- 1575 입학 관리과 : 051)510- 1215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40 (21/19)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20점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성적 : 20점 [합계 : 100점]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705- 7833, 8790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150 (150/0)	『일반전형』 • 어학성적 : P/F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정성평가 : 50점 [합계 : 250점]	『일반전형』 • 1단계 성적 : 25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50점 [합계 : 300점]	정원의 1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11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880- 7539
		『특별전형』 • 어학성적 : P/F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정성평가 : 100점 [합계 : 300점]	『특별전형』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서울시립대 [조세법]	50 (50/0)	• LEET성적 : 1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5점]	• 1단계 성적 : 75점 • 논술성적 : 5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6490- 5070
성균관대 [기업법무]	120 (0/1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5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5점]	• 1단계 성적 - 85점 • 면접성적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760- 0922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50 (26/24)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 : 15점 (서류10점/논술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1/3명 이상 • 타 대학 : 1/3명 이상	법전문 교학팀 : 031)219- 1667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 계]	2 단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연세대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120 (0/12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합계점수 : 40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특별전형 : 3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검토함. • 일반전형은 영어성적 최저기준 적용	법전원 행정실 : 02)2123- 2899
영남대 [공익 인권법]	70 (35/35)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3명 ‘나’군: 2명)	• 비법학사 : 24명 이상 • 타 대학 : 49명 이상 • 지역인재 : 1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810- 2693
원광대 [의생명 분야]	60 (30/30)	• LEET성적 : 4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면접성적 : 20점 - 대면평가 : 15점 - 서면평가 : 5점 자기소개서 제출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850- 5083 입학 관리처 : 063)850- 5264
이화여대 [생명 의료법, Gender법]	100 (0/100)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40점 • 어학성적 : 30점 • 서류심사 : 50점 [합계 : 180점]	• 1단계 성적 : 180점 • 논술성적 : 10점 • 심층면접 : 10점 [합계 : 2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나’군)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77- 2733,4
인하대 [지적 재산권, 물류법]	50 (25/25)	• LEET성적 : 2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2)860- 7920
전남대 [공익 인권법]	120 (60/6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2)530- 2208 입학과 : 062)530- 4738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 계]	2 단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전북대 [동북아법]	80 (37/43)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270- 2661 입학 관리과 : 063)270- 4744
제주대 [국제법무]	40 (20/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20점 - LEET논술 : 4점 - 구술고사 : 16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4)754- 2992 입학 관리과 : 064)754- 3994
중앙대 [문화법]	50 (50/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20- 5422~4
충남대 [지적 재산권]	100 (50/50)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50점]	• 1단계 성적 : 350점 • 논술성적 : 20점 • 면접성적 : 40점 • 기타 [합계 : 410점]	정원의 2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나’군)	• 비법학사 : 42명 이상 • 타 대학 : 60명 이상 • 지역인재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2)821- 8507 입학과 : 042)1644- 8433
충북대 [과학기술 법무]	70 (40/30)	• LEET성적 : 15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60점 [합계 : 410점]	• 1단계 성적 : 41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5명 이상 • 타 대학 : 25명 이상 • 지역인재 : 1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3)261- 2615 입학과 : 043)261- 3303
한국외대 [국제지역]	50 (30/2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학사 지원팀 : 02)2173- 2461~3 FAX : 02)2173- 2966
한양대 [국제소송, 지적재산· 정보 공익· 소수자인권]	100 (0/1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나’군)	• 비법학사 : 4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2220- 2770 입학처 : 02)2220- 0078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